

2023 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

▣	국	토	교	통	부	소	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	관				
▣	새만금개발청	소	관				

2024. 9.

국토교통위원회

>>>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3
III. 결산개요	4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52
V. 대체토론의 요지	66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68
VII. 심사결과	71
VIII. 소수의견의 요지	71
IX. 결산시정요구사항	71

※ 붙 임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2023회 계 연 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9.

국토교통위원장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토교통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기 금
 - 주택도시기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3.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Ⅱ. 심사경과

1. 제출 일자 : 2024. 5. 31.

2. 회부 일자 : 2024. 6. 1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9. 4.)

상정, 심사, 원안의결

○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심사보고, 대체토론, 원안의결

Ⅲ. 결산개요

국토교통부 소관

1. 총괄

가. 총수입·총지출¹⁾ 결산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조 6,493억원(24.5%)이 감소한 17조 4,1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3,106억원(8.1%)이 증가하였음.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예산	1,010,767	1,216,832	206,065	1,065,829	1,307,416	241,587	90,584
기금	20,099,816	14,888,882	△5,210,936	21,999,760	16,108,916	△5,890,844	1,220,034
총수입	21,100,583	16,105,714	△5,004,871	23,065,589	17,416,332	△5,649,257	1,310,618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조 417억원(△5.6%)이 감소한 51조 6,1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조 7,246억원(△6.7%)이 감소하였음.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예 산	24,990,468	23,473,388	△1,517,080	22,401,280	21,098,171	△1,303,109	△2,375,217
기 금	32,566,778	31,871,115	△695,663	32,260,316	30,521,718	△1,738,598	△1,349,397
총지출	57,557,246	55,344,502	△2,212,742	54,661,596	51,619,888	△3,041,708	△3,724,614

2023년도 총지출 기준 결산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총지출 기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억원, %)

회 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	불용
총지출(A+B+C)		546,616	554,597	516,199	93.1	6,624	31,774
세출예산 합계(A)		224,013	231,963	210,982	91.0	6,600	14,381
일반회계		67,816	68,400	67,203	98.3	560	636
특별회계	소 계	156,197	163,563	143,779	87.9	6,040	13,744
	교통시설특별회계	133,619	139,050	120,650	86.6	5,516	12,8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245	24,177	22,823	94.4	521	833
	혁신도시특별회계	161	165	149	90.3	3	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1	171	157	91.8	0	14
주택도시기금(B)		321,997	322,028	304,611	94.6	24	17,39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C)		606	606	606	100.0	0	0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 및 기금의 결산현황 및 회계·기금 간 거래 등 재정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나.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액(총계 기준)은 14조 7,547억원이고, 징수결정한 금액 15조 8,525억원 중 14조 2,247억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9.7%임.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총계) 결산 총괄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전년도 수납액	전년대비 증감률
				C/A	C/B		
세 입	147,547	158,525	142,247	96.4	89.7	162,560	△12.5

2023년도 세출예산액(총계 기준)은 35조 7,440억원이고, 전년도이월액 등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6조 5,390억원이며, 이 중 31조 3,807억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9%임.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총계) 결산 총괄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전년도 집행액	전년대비 증감률
				C/A	C/B		
세 출	357,440	365,390	313,807	87.8	85.9	395,387	△20.6

1) 세 입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7,547억원, 징수결정액은 15조 8,525억원이며 이 중 14조 2,247억원을 수납하고 1조 6,194억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84억원임.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전체 세입수납액 14조 2,247억원 중에서 13조 3,234억원(93.7%)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조 6,194억원 중 1조 4,504억원(89.6%)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 84억원 중 83억원(98.8%)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음.

【 2023년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억원)

회 계		예산액	이체 등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 (A-B-C)
합 계		147,547	-	147,547	158,525	142,247	84	16,194
일반회계		1,751	-	1,751	2,629	2,327	-	301
특 별 회 계	소 계	145,796	-	145,796	155,897	139,920	84	15,893
	교특회계	140,238	-	140,238	134,625	133,234	1	1,389
	지특회계	5,193	-	5,193	20,939	6,353	83	14,504
	혁특회계	357	-	357	329	329	-	-
	에특회계	8	-	8	4	4	-	-

※ - : 0원, 0 : 소수점 이하금액으로 표에는 표기되지 않음

미수납 사유로는 납기미도래(8,548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2,375억원), 징수·정리유예(366억원), 관계기관 예산부족(110억원), 기타(4,785억원) 등이 있고, 불납결손 사유는 체납자 무재산(19억원), 시효완성(44억원), 부도(4억원) 등이 있음.

2) 세 출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35조 7,440억원, 예산현액은 36조 5,390억원으로 이 중 31조 3,807억원(85.9%)을 집행하고 6,600억원(1.8%)을 이월하였으며 4조 4,982억원(12.3%)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357,440	7,950	-	±25	±5,759	365,390	313,807	6,600	44,982
일반회계		194,459	584	-	±25	±232	195,043	163,247	560	31,235
특 별 회 계	소계	162,980	7,366	-	-	±5,526	170,347	150,560	6,040	13,747
	교통	140,238	5,430	-	-	±5,269	145,669	127,268	5,516	12,885
	지특	22,245	1,932	-	-	±257	24,177	22,823	521	833
	혁특	326	4	-	-	-	330	312	3	15
	에특	171	-	-	-	-	171	157	-	14

회계별로 보면 이월액은 일반회계 56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5,51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21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3조 1,235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2,88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33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억원이 발생하였음.

주요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3,839억원),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806억원) 등의 사유로 6,600억원(1.8%)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사유는 내부거래 미실시(3조 599억원), 집행잔액 등(8,407억원), 지급사유 미발생(5,816억원) 등의 사유로 4조 4,982억원(12.3%)이 발생하였으며, 이용은 인건비 부족(21억원), 공공요금 등 충당(4억원) 등으로 25억원, 전용은 사업계획 변경(275억원), 배상·보상금 등 충당(222억원) 등으로 5,759억원이 발생하였음.

다. 기금 결산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은 총계 기준 95조 4,377억원으로 당초 계획액 105조 5,355억원 대비 90.4%를 달성하였고, 2022년도 108조 22억원에 비해서는 12조 5,646억원이 감소하였음.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별 조성 및 운용 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D-B)
	계획(A)	실적(B)	대비(B/A)	계획(C)	실적(D)	대비(D/C)	
합 계	931,533	1,082,628	116.2	1,057,981	957,014	90.5	△125,614
주택도시기금	928,892	1,080,022	116.3	1,055,355	954,377	90.4	△125,64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41	2,606	98.7	2,626	2,637	100.4	3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2017년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조성 및 운용 실적은 2,637억원으로 당초 계획액 2,626억원 대비 100.4%를 달성하였고, 2022년도 2,606억원에 비해서는 31억원이 증가하였음.

라. 부문별 결산

국토교통부 예산은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에 주택, 도로, 철도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8개 부문 중 주택(기금포함) 부문의 집행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도로, 철도, 기초생활보장 부문 순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부문은 항공·공항(72.7%), 산업단지(85.8%)가 있음.

【 2023년도 부문별 세출결산 총괄표(총지출 기준) 】

(단위: 백만원, %)

부문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등*	이용	예비비	이체·초과 지출승인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	불용액
합 계		54,661,596	798,122	±1,331,573	±2,531	-	11	55,459,729	51,619,888 (93.1)	662,400	3,177,441
주택	예산	151,861	913	-	-	-	-	152,774	148,883 (97.5)	708	3,183
	기금	32,199,671	3,119	-	-	-	-	32,202,790	30,461,073 (94.6)	2,353	1,739,365
도로		7,840,807	397,588	±1,091,670	-	-	-	8,238,395	7,320,169 (88.9)	432,784	485,442
철도		7,589,595	216,924	±141,659	-	-	-	7,806,519	6,958,343 (89.1)	60,736	787,440
항공·공항		343,508	66,969	±4,766	-657	-	-	409,820	298,141 (72.7)	62,104	49,574
물류 기타	예산	1,868,219	23,955	±26,196	+2,484 -688	-	11	1,893,980	1,840,462 (97.2)	20,556	32,962
	기금	60,645	-	-	-	-	-	60,645	60,645 (100.0)	-	-
산업 단지		336,086	70,783	±53,562	-	-	-	406,869	349,018 (85.8)	47,171	10,680
지역 및 도시		1,698,938	17,390	±13,721	+48 -1,187	-	-	1,715,189	1,624,073 (94.7)	29,194	61,923
기초생활보장		2,572,266	481	-	-	-	-	2,572,747	2,559,081 (99.5)	6,795	6,871

*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금액

**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100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5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29억원이며, 이 중 2,327억원을 수납하고 301억원을 미수납하였음. 미수납은 납기미도래(0.3억원), 채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209억원), 관계기관 예산부족(50억원), 정리유예 및 징수유예(20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175,100	262,854	232,739	-	30,116	57,639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15,666	20,005	18,963	-	1,043	3,297
◦ 경상이전수입						
- 벌금, 변상금및위약금 보조금정산잔액 등	140,264	234,482	207,898	-	26,583	67,63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지도판매, 교육비, 재산조회수수료 등	11,831	760	735	-	26	△11,096
◦ 수입대체경비수입						
- 건설품질시험 및 항행안전검사 수수료	4,128	1,415	1,249	-	166	△2,879
◦ 관유물 매각대						
- 토지 및 기계기구 등 매각대	3,211	6,192	3,894	-	2,298	683

2) 세 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조 5,043억원이고, 이 중 16조 3,247억원(83.7%)을 집행하고 560억원(0.3%)을 이월하였으며 3조 1,235억원(16.0%)은 불용 처리하였음. 이월은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540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은 내부거래 미집행(3조 599억원) 등에 의하여 발생함.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445,889	19,504,275	16,324,697	56,047	3,123,525
○ 기초생활보장	2,572,266	2,572,747	2,559,081	6,795	6,871
- 기초주거생활보장 (주거급여)	2,572,266	2,572,747	2,559,081	6,795	6,871
○ 주택	4,703,056	4,703,969	3,180,456	708	1,522,805
-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44,186	145,099	141,208	708	3,183
- 내부거래지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금)	4,558,870	4,558,870	3,039,248	-	1,519,622
○ 도로	2,218,130	2,218,130	1,518,130	-	700,000
- 회계간거래(전출금) (교특 도로계정 전출금)	2,218,130	2,218,130	1,518,130	-	700,000
○ 철도	7,879,733	7,898,825	7,091,519	3,383	803,923
- 철도안전및운영	2,326,876	2,345,968	2,337,216	3,383	5,369
- 회계간거래(전출금) (교특 철도·교통체계계정 전출금)	5,552,857	5,552,857	4,754,303	-	798,554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항공·공항	344,141	343,484	309,532	29	33,923
- 항공발전지원	10,259	10,259	9,421	9	829
- 항공운영지원	15,559	14,902	14,698	20	184
- 회계간거래(전출금) (교특 공항계정 전출금)	318,323	318,323	285,413	-	32,910
○ 물류등기타	1,173,817	1,196,527	1,158,339	16,523	21,659
- 물류정책	33,397	33,932	22,873	459	10,600
- 국토교통연구개발	343,646	344,285	343,665	528	92
- 국토교통정보화	107,541	112,022	104,721	3,568	3,734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157,231	168,728	154,193	9,765	4,768
- 국토교통인재개발	1,351	1,362	1,353	-	9
- 자동차 및 교통정책	155,437	155,530	154,923	233	374
- 국토교통행정지원	355,102	361,196	357,340	1,942	1,909
- 항공교통본부(책임운영)	20,112	19,472	19,271	28	173
○ 지역및도시	554,246	569,981	507,047	28,609	34,325
- 지역개발	3,580	3,742	3,432	119	191
- 도시정책	163,163	167,237	159,819	2,369	5,051
- 국토정보관리	184,933	187,024	184,887	200	1,935
- 국토지리정보원운영	162,248	169,761	128,170	24,764	16,826
- 건축정책	24,232	26,127	23,439	1,157	1,532
- 회계간거래(전출금) (혁특 지역자율계정 전출금)	16,090	16,090	7,300	-	8,790
○ 산업단지	500	612	593	-	19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500	612	593	-	19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 입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4조 23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4,625억원이며, 이 중 13조 3,234억원을 수납하고 1,389억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계 정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14,023,811	13,462,450	13,323,434	70	138,945	△700,377
○ 도 로	7,906,130	7,689,358	7,571,786	70	117,502	△334,344
- 재산수입	59,725	76,459	59,467	68	16,924	△258
- 경상이전수입	53,530	139,187	40,359	2	98,826	△13,17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580	2,321	1,505	-	817	△3,075
- 관유물매각대	6,231	9,953	9,017	-	935	2,786
- 전년도이월금	-	392,038	392,038	-	-	392,038
- 세계잉여금	-	348	348	-	-	348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782,064	7,069,052	7,069,052	-	-	△713,012
○ 철 도	4,707,602	4,417,403	4,406,076	-	11,326	△301,526
- 재산수입	4,502	31,871	29,239	-	2,632	24,737
- 경상이전수입	16,677	62,339	59,792	-	2,546	43,11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819	27,281	27,281	-	-	10,462
- 관유물매각대	83,399	74,260	68,112	-	6,148	△15,287
- 전년도이월금	-	82,545	82,545	-	-	82,545
- 세계잉여금	-	147,584	147,584	-	-	147,584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86,205	3,991,523	3,991,523	-	-	△594,682
○ 공 항	416,090	445,293	435,179	-	10,114	19,089
- 재산수입	8,876	3,251	3,160	-	91	△5,716
- 경상이전수입	20,247	20,009	10,194	-	9,815	△10,05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8,445	62,714	62,506	-	208	△5,939
- 관유물매각대	199	166	166	-	-	△33
- 전년도이월금	-	66,969	66,969	-	-	66,969
- 세계잉여금	-	6,771	6,771	-	-	6,77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8,323	285,413	285,413	-	-	△32,910
○ 교통체계 관리계정	993,989	910,396	910,393	-	3	△83,596
- 재산수입	955	4,206	4,206	-	-	3,251
- 경상이전수입	26,382	60,265	60,262	-	3	33,880
- 전년도이월금	-	1,520	1,520	-	-	1,520
- 세계잉여금	-	81,625	81,625	-	-	81,625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66,652	762,780	762,780	-	-	△203,872

2) 세 출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4조 5,669억원으로, 이 중 12조 7,268억원(87.4%)을 집행하고, 5,516억원(3.8%)을 이월하였으며, 1조 2,885억원(8.8%)은 불용처리하였음. 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3,157억원),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804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은 집행잔액 등(7,75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4,977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음.

【 2023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4,023,811	14,566,884	12,726,847	551,578	1,288,457
○ 도로계정	7,906,130	8,298,168	7,417,630	428,118	452,417
- 고속도로건설	1,679,078	1,679,137	1,434,774	529	243,834
- 국도건설	1,951,454	2,193,426	1,827,876	204,002	161,549
- 도로관리	2,606,389	2,755,956	2,510,179	223,586	22,187
-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073,531	1,073,971	1,049,123	1	24,847
- 지자체도로건설지원	1,600	1,600	1,600	-	-
- 국토교통연구개발	13,751	13,751	13,751	-	-
- 회계간거래(균특 전출금)	280,327	280,327	280,327	-	-
- 회계기금간거래(기후대응기금)	300,000	300,000	300,000	-	-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철도계정	4,707,602	4,790,148	4,180,015	43,299	566,833
- 고속철도건설	442,291	442,291	404,416	-	37,875
- 일반철도건설	2,222,921	2,222,921	1,700,904	-	522,017
- 철도안전및운영	809,051	809,078	806,019	1,028	2,031
- 광역철도건설	1,063,308	1,144,343	1,102,071	42,271	-
- 국토교통연구개발	88,466	89,950	85,040	-	4,910
- 회계간거래(균특 전출금)	81,565	81,565	81,565	-	-
○ 공항계정	416,090	483,059	372,421	62,076	48,563
- 일반공항건설및관리	160,120	208,921	118,732	49,935	40,255
- 항공발전지원	157,570	175,738	155,289	12,141	8,308
- 국토교통연구개발	98,400	98,400	98,400	-	-
○ 교통체계관리계정	993,989	995,509	756,781	18,085	220,644
- 도시철도건설	643,583	643,583	410,371	14,054	219,158
- 국토교통정보화	662	662	660	-	2
- 대중교통육성	349,744	351,264	345,750	4,031	1,484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19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939억원이며, 이 중 6,353억원을 수납하고, 1조 4,504억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3억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미수납은 납기미도래(8,445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999억원), 징수·정리유예(245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음.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519,321	2,093,936	635,272	8,293	1,450,371	115,951
○ 지역자율계정	238,208	1,536,690	296,687	8,291	1,231,711	58,479
- 재산수입	758	1,698	1,654	-	45	896
- 경상이전수입	237,449	1,534,990	295,033	8,291	1,231,664	57,58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2	-	-	2	△1
○ 지역지원계정	280,522	557,140	338,479	2	218,660	57,957
- 재산수입	2,836	3,879	3,750	-	129	914
- 경상이전수입	274,527	541,623	323,972	2	217,650	49,44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	-	-	-	△2
- 관유물매각대	3,157	11,638	10,757	-	881	7,600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7	3	3	-	-	△254
- 재산수입	10	-	-	-	-	△10
- 경상이전수입	247	3	3	-	-	△244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34	103	103	-	-	△231
- 재산수입	24	3	3	-	-	△21
- 경상이전수입	310	100	100	-	-	△210

2) 세 출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4,177억원이고, 2조 2,823억원(94.4%)을 집행하고 521억원(2.2%)을 이월하였으며, 833억원(3.4%)은 불용 처리하였음. 이월은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139억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120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은 지급사유 미발생(704억원), 집행잔액 등(118억원) 등에 의해 발생함.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224,547	2,417,713	2,282,312	52,143	83,260
○ 지역자율계정	312,772	312,772	312,772	-	-
- 광역교통정책	28,920	28,920	28,920	-	-
- 지역개발	222,402	222,402	222,402	-	-
- 도시정책	61,450	61,450	61,450	-	-
○ 지역지원계정	1,815,103	2,006,019	1,875,029	50,080	80,912
-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72,445	477,995	440,310	4,664	33,021
- 광역철도건설	81,565	198,335	197,345	-	990
- 국토교통연구개발	12,800	12,800	12,800	-	-
- 광역교통정책	63,595	63,644	58,858	-	4,786
- 자동차및교통정책	2,401	2,401	2,401	-	-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대중교통육성	22,330	22,330	22,330	-	-
- 지역개발	202,103	202,160	201,953	176	30
- 도시정책	602,895	602,912	569,840	131	32,941
- 국토정보관리	22,034	22,083	22,042	-	41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325,260	393,684	339,475	45,109	9,103
-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7,675	7,675	7,675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3,606	83,606	82,819	-	787
- 국도건설	25,029	25,029	25,029	-	-
- 도로관리	31,281	31,281	31,281	-	-
- 광역교통정책	100	100	100	-	-
- 도시정책	23,224	23,224	22,437	-	787
- 국토교통행정지원	3,972	3,972	3,972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3,066	15,316	11,692	2,063	1,561
- 광역교통정책	1,240	1,240	1,240	-	-
- 도시정책	1,500	1,500	1,500	-	-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10,326	12,576	8,952	2,063	1,561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23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57억 원이고, 32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3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35,666	32,922	32,922	-	-	△2,744
재산수입	22	506	506	-	-	484
기타경상이전수입	52	3,279	3,279	-	-	3,227
전년도이월금	-	394	394	-	-	394
세계잉여금	1,642	6,443	6,443	-	-	4,801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3,950	22,300	22,300	-	-	△11,650

2023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0억 원으로 이 중 312억 원(94.5%)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억 원(0.8%)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으로 15억 원(4.7%)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3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지역 및 도시	32,622	33,015	31,193	277	1,545
- 지역개발	16,090	16,483	14,922	277	1,284
-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6,532	16,532	16,271	-	261

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억원이고, 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767	354	354	-	-	△413
재산수입	13	35	35	-	-	22
기타경상이전수입	754	319	319	-	-	△435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1억원으로, 이 중 157억원(91.7%)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14억원(8.3%)은 불용 처리하였음.

【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투자계정	17,105	17,105	15,677	-	1,428
- 물류정책	5,783	5,783	5,754	-	29
- 국토교통정보화	2,238	2,238	2,146	-	92
- 건축정책	9,084	9,084	7,777	-	1,307

3. 기금 결산

가. 주택도시기금

1) 조성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내역을 보면 청약저축은 계획보다 6조 5,446억원 감소한 14조 9,607억원을 수납하고, 융자금 회수는 계획보다 5조 7,336억원 감소한 11조 9,398억원을 수납하였으며, 국민주택채권은 계획보다 2조 6,283억원 감소한 13조 3,717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내역(총계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23계획(A)	'23실적(B)	증감(B-A)	달성률(B/A)
청약저축	215,053	149,607	△65,446	69.6
융자금회수	176,733	119,398	△57,336	67.6
국민주택채권	160,000	133,717	△26,283	83.6
이자수입	33,655	30,493	△3,162	90.6
복권기금전입금	4,500	4,500	-	100.0
일반회계전입금	45,589	30,392	△15,196	66.7
여유자금회수	253,020	319,177	66,157	126.1
기 타*	166,804	167,092	288	100.2
합 계	1,055,355	954,377	△100,978	90.4

* 기타 : 정부출자수입,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탁이자수입 등

2) 운용

2023년도 기금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운용규모 95조 4,377억원 중 용자사업비가 22조 2,339억원, 차입금 상환 등이 52조 2,942억원, 여유자금운용이 20조 9,095억원임.

용자사업비 운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 11조 3,124억원을 집행하고, 다가구매입임대에 1조 4,617억원, 전세임대에 4조 8,670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차입금상환 등에서는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출자사업비로 4조 1,855억원,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원리금상환에 31조 4,689억원, 이차보전지원에는 9,307억원, 기금운영비에는 2,254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3계획(A)	'23실적(B)	증감(B-A)	계획대비 실적(B/A)
○ 용자사업비(①)	233,082	222,339	△10,743	95.4
- 국민임대	1,574	1,483	△91	94.2
- 공공임대	2,515	2,466	△49	98.0
- 민간임대	17,088	16,606	△483	97.2
- 다가구매입임대	15,331	14,617	△714	95.3
- 집주인임대	700	502	△198	71.7
- 위험건축물이주	60	60	△0	99.9
- 분양주택	11,164	5,760	△5,404	51.6
- 층간소음성능보강	150	1	△149	0.7
-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	40	-	△40	-
- 주택구입·전세자금	113,605	113,124	△482	99.6
- 행복주택	6,201	5,363	△837	86.5
- 전세임대	50,877	48,670	△2,207	95.7
- 통합공공임대	5,224	5,164	△60	98.9
- 도시재생지원	2,301	2,301	-	100.0
- 수요자중심형재생	411	392	△19	95.4
- 소규모주택정비	4,887	4,878	△9	99.8
- 노후산단재생지원	952	952	-	100.0
○ 차입금상환 등(②)	545,428	522,942	△22,486	95.9
- 출자사업비	46,249	41,855	△4,394	90.5
-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3,839	3,839	△0	100.0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	1,278	1,268	△10	99.2
- 이차보전지원	10,105	9,307	△799	92.1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	1	△0	77.4
- 도시재생사업지원	154	135	△18	88.0
- 기금운영비	2,461	2,254	△206	91.6
- 정부내부지출	149,594	149,594	△0	100.0
- 차입금원리금상환	331,747	314,689	△17,058	94.9
· 국민주택채권	165,508	151,573	△13,935	91.6
· 청약저축	166,239	163,116	△3,123	98.1
소 계(①+②)	778,510	745,281	△33,228	95.7
○ 여유자금운용*	276,845	209,095	△67,750	75.5
합 계	1,055,355	954,377	△100,978	90.4

*주택도시기금 운용내역 상 “여유자금운용”은 연중 자금흐름(flow)을 표시한 것으로 연도말 잔액 기준(stock)인 “여유자금 규모”와 차이가 있으며, 기금이 연중 운용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입한 현금의 합계를 의미함.

3)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9조 4,712억원 감액한 19조 2,513억원이며, 연간 여유자금 운용 평균잔액(평잔)은 20조 2,2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조 8,368억원 감소하였음.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품 (수익률)	전담운용기관 (수익률)
2021	48,982,497	45,041,034 (3.29%)	189,885 (0.45%)	2,003,254 (1.37%)	42,847,895 (3.37%)
2022	28,722,459	43,064,716 (-3.58%)	256,414 (0.60%)	1,710,956 (0.33%)	41,097,346 (-3.78%)
2023	19,251,290	20,227,954 (8.26%)	383,601 (0.62%)	2,659,643 (5.74%)	17,184,710 (8.90%)

* '23년말 잔액기준 여유자금

2023년도에는 여유자금(평잔)의 84.96%에 해당하는 17조 1,847억원을 전담 운용기관에, 2조 6,596억원을 연기금투자품에 각각 위탁 운용하고, 3,836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용하였음. 여유자금(평잔)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전체 평균 수익률은 8.26%로 2022년도 대비 11.84%p 상승하였고, 직접운용 수익률은 0.62%, 위탁운용 수익률은 연기금투자품이 5.74%, 전담운용기관이 8.90%로 각각 나타났음.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 조성

202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2,637억원으로 자체 수입 595억원, 정부내부수입 1,032억원, 여유자금 회수 1,009억원으로 구성되며, 자체수입의 세부조성내역을 보면, 분담금 321억원, 구상회수금 123억원, 위탁사업비 반납액 79억원, 생활자금대출 회수 63억원, 이자수입 10억원으로 나타났다.

【 202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3계획(A)	'23실적(B)	증감(B-A)	달성률(B/A)
○ 자체수입	556	595	40	107.1
- 분담금	348	321	△27	92.1
- 위탁사업비 반납	15	79	63	514.0
- 구상회수	100	123	23	123.1
- 생활자금대출 회수	64	63	△1	98.6
- 이자수입	29	10	△19	34.0
○ 정부내부수입	1,022	1,032	10	101.0
○ 여유자금 회수	1,048	1,009	△39	96.3
합 계	2,626	2,637	10	100.4

2) 운용

202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은 위탁사업비 603억원, 공자기금 예탁 1,000억원, 여유자금운용 1,03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업비의 세부지원내역은 의무보험전산망운영 23억원, 피해자 지원 226억원, 정부보장사업 207억원,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11억원, 국립교통 재활병원운영 128억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억원임.

【 202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3계획(A)	'23실적(B)	증감(B-A)	계획대비 실적(B/A)
○ 위탁사업비	603	603	-	100.0
- 의무보험전산망	23	23	-	100.0
· 유지보수비	7	7	-	100.0
· 운영관리비	16	16	-	100.0
- 피해자지원	226	226	-	100.0
· 경제적 지원	183	183	-	100.0
· 정서적 지원	9	9	-	100.0
· 지원사업 홍보	2	2	-	100.0
· 관리운영비	29	29	-	100.0
· 피해예방사업	3	3	-	100.0
- 정부보장사업	207	207	-	100.0
· 무보험·뺑소니보상	177	177	-	100.0
· 미반환가불금보상	15	15	-	100.0
· 관리운영비	15	15	-	100.0
- 생활지원 및 학자금	11	11	-	100.0
· 생활지원 및 학자금	11	11	-	100.0
- 국립교통재활병원	128	128	-	100.0
· 운영교부금	56	56	-	100.0
· 장비유지·보수	62	62	-	100.0
· 재활프로그램 연구	10	10	-	100.0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	8	-	100.0
· 공제정책 및 감독검사지원	2	2	-	100.0
·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 지원	2	2	-	100.0
· 시스템구축비	4	4	-	100.0
○ 기금운영비	4	4	-	1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00	1,000	-	100.0
○ 여유자금운용	1,009	1,030	11	101.0
합 계	2,626	2,637	11	100.4

3)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

202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연도말 잔액기준으로 1,030억원이고, 연간 여유자금 운용 평균잔액(평잔) 기준으로는 1,015억원임.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품 (수익률)	전담운용기관 (수익률)
2021	203,163	204,203 (△0.28%)	-	204,203 (△0.28%)	-
2022	100,932	141,450 (△3.38%)	-	141,450 (△3.38%)	-
2023	103,015	101,474 (8.06%)	-	101,474 (8.06%)	-

* 여유자금 규모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총 규모를 의미함.

2023년도에는 여유자금(평잔) 1,015억원 전액을 연기금투자품에 위탁 운용하였고, 여유자금(평잔)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8.06%로 2022년도 대비 11.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재무결산 중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전년도 대비 2조 2,364억원(0.3%)이 증가한 717조 6,589억원이고, 부채는 전년도 대비 1조 2,631억원(0.7%)이 증가한 193조 7,490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순자산은 523조 9,098억원임.

자산은 유동자산 63조 3,019억원, 투자자산 211조 2,743억원, 일반유형자산 122조 8,433억원, 사회기반시설 318조 7,52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투자증권 등의 감소에 따라 유동자산이 7조 723억원이 감소하였고, 장기대여금 및 장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투자자산이 7조 6,683억원이 증가하였음.

부채는 유동부채 123조 2,817억원, 장기차입부채 65조 7,939억원, 장기충당부채 634억원, 기타비유동부채 4조 6,10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보다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가 2조 4,59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채 등 장기차입부채가 2조 1,548억원이 감소하였음.

【 전년도 대비 재정상태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717,658,865	715,422,470	2,236,395	0.3
Ⅰ. 유동자산	63,301,894	70,374,169	△7,072,275	△10.0
Ⅱ. 투자자산	211,274,342	203,606,057	7,668,285	3.8
Ⅲ. 일반유형자산	122,843,322	121,431,283	1,412,039	1.2
Ⅳ. 사회기반시설	318,752,341	319,060,396	△308,055	△0.1
Ⅴ. 무형자산	231,720	261,258	△29,538	△11.3
Ⅵ. 기타비유동자산	1,255,247	689,307	565,940	82.1
부 채	193,749,044	192,485,991	1,263,053	0.7
Ⅰ. 유동부채	123,281,676	120,822,603	2,459,073	2.0
Ⅱ. 장기차입부채	65,793,915	67,948,720	△2,154,805	△3.2
Ⅲ. 장기충당부채	63,363	57,240	6,123	10.7
Ⅳ. 기타비유동부채	4,610,089	3,657,428	952,661	26.0
순 자 산	523,909,821	522,936,479	973,342	0.2
Ⅰ. 기본순자산	57,495,833	57,495,833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552,310,849	551,894,032	416,817	0.1
Ⅲ. 순자산 조정	△85,896,861	△86,453,385	556,524	△0.6

나. 재정운영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손실 20조 7,650억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충원가 26조 4,638억원, 관리운영비 4,167억원 및 비배분비용 8,5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조 8,571억원, 비배분수익 1조 6,322억원 및 비교환수익 4,8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2023년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보다 26조 3,036억원(52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21조 7,324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임.

【 전년도 대비 재정운영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21,606,651	15,970,591	5,636,060	35.3
가. 프로그램 총원가	26,463,780	37,151,961	△10,688,181	△28.8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857,129	21,181,370	△16,324,241	△77.1
II. 관리운영비	416,655	402,015	14,640	3.6
III. 비배분비용	856,068	1,935,573	△1,079,505	△55.8
IV. 비배분수익	1,632,215	23,364,656	△21,732,441	93.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1,247,159	△5,056,476	26,303,635	520.2
VI. 비교환수익 등	482,115	583,877	△101,762	△17.4
VII. 재정운영결과(순비용, V - VI)	20,765,044	△5,640,353	26,405,397	468.2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175억원, 경비 99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재평가손실 6,391억원과 전기오류수정손실 80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4조 5,020억원)과 일반철도건설 프로그램(3조 1,298억원), 철도안전및운영 프로그램(2조 8,911억원)이 있음.

다. 순자산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기초순자산은 522조 9,365억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23조 9,098억원으로 기초 대비 9,733억(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21조 1,716억원, 재정운영결과 20조 7,650억원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효과 등 때문임.

【 전년도 대비 순자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22,936,479	626,215,187	△103,278,708	△16.5
II. 재정운영결과	20,765,044	△5,640,353	26,405,397	468.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1,171,563	26,616,737	△5,445,174	△20.5
IV. 조정항목	566,824	△135,535,798	136,102,622	100.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23,909,821	522,936,479	973,342	0.2

한편, 2023년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로 8조 9,904억원이 감소하고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이 3조 5,453억원이 감소하여 5조 4,45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조 3,056억이 증가, 자산재평가이익 12조 6,874억원이 증가하여 136조 1,026억원이 증가하였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1. 총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라 함)로 구성되어 있음.

가. 세입

행복청의 세입예산은 행특회계에만 편성되어 있고,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250억 3,400만원이고, 2,748억 5,5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22.1%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35.8% 감소하였음.

【 2023년도 행복청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	수납액(B)	예산액 대비 수납률(B/A)	전년도 수납액(C)	전년도 수납액 대비 증감률 [(B-C)/C]
세입	225,034	225,034	274,855	122.1	428,307	△35.8

※ 자료: 행복청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499억 3,800만원을 초과한 2,749억 7,200만원으로, 이 중 2,748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임.

【 2023년도 행복청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C/B)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금액 (C-A)	비율 [(C-A)/A]
행특회계	225,034	274,972	274,855	-	117	99.9	49,821	22.1

※ 자료: 행복청

나. 세 출

행복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행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복청의 세출예산액(총계 기준)은 4,452억 4,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68억 6,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21억 1,000만원으로, 이 중 4,003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4%이며, 집행액은 전년도 대비 47.7% 감소하였음.

【 2023년도 행복청 세출(총계)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	전년도 집행액(C)	전년도 대비 증감률 {(B-C)/C}
일반회계	220,215	-	220,215	220,215	100.0	391,514	△43.8
행특회계	225,034	46,861	271,895	180,117	66.2	374,158	△51.9
합 계	445,249	46,861	492,110	400,332	81.4	765,672	△47.7

※ 자료: 행복청

행복청의 2023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행특회계 전출금) 2,202억 1,500만원을 전액 행특회계에 전출하였고, 행특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예산액 2,250억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8억 6,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718억 9,500만원 중 1,80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78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5,800만원임.

【 2023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총 계	445,249	46,861	-	±8,935	-	492,110	400,332	87,821	3,958
일반회계	220,215	-	-	-	-	220,215	220,215	-	-
행특회계	225,034	46,861	-	±8,935	-	271,895	180,117	87,821	3,958

※ 자료: 행복청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202억 1,500만원이고 전액 행특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음.

【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회계간전출금(행특회계)	220,215	220,215	220,215	-	-

※ 자료: 행복청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세 입

행특회계의 202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2,749억 7,200만원 중 2,748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이며, 예산액 대비 498억 2,1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초과수납분은 주로 전년도 이월금(468억 6,100만원)에서 발생하였음.

【 2023년 행특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금 액 (C-A)	비 율 [(C-A)/A]
합 계	225,034	274,972	274,855	-	117	49,821	22.1
토지대여료	-	1	1	-	0.1	1	-
기타재산이자수입	328	42	40	-	2	△288	△87.8
과태료	-	1	-	-	1	-	-
위약금	-	7	-	-	7	-	-
기타경상이전수입	4,094	556	450	-	106	△3,644	△89.0
기타잡수입	-	0.2	0.2	-	-	0.2	-
전년도이월금	-	46,861	46,861	-	-	46,861	-
전년도세계잉여금	397	7,288	7,288	-	-	6,891	1,735.8
일반회계전입금	220,215	220,215	220,215	-	-	-	-

※ 자료: 행복청

행특회계의 주요 수납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2억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68억 6,100만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72억 8,800만원, 기타경상이자 수입 4억 5,0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0.1%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 환수액 9,400만원, 소송비용 환수액 1,500만원, 위약금 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등이며, 이는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2) 세 출

행특회계는 예산액 2,250억 3,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68억 6,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718억 9,500만원 중 1,80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78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5,800만원임.

주요 사업별 집행액은 광역교통시설 건설 579억 200만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402억 6,200만원,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98억 6,700만원, 지방행정시설 건립 121억 700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12억 3,400만원 등임.

【 2023년도 행특회계 사업별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	전용 ²⁾	이용				
합계	225,034	46,861	±8,935	-	271,895	180,117	87,821	3,958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300	-	-	-	300	-	300	-
광역교통시설 건설	57,869	11,494	748	-	70,111	57,902	12,200	9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12,057	-	-	47,057	-	47,057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5,058	440	-	-	5,498	2,657	2,839	2
도담어진지구대 건립	1,313	1,329	1,431	-	4,073	3,972	101	0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7,760	66	2,609	-	20,435	19,867	568	0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00	-	-	-	100	54	0	46
지방행정시설 건립	15,051	2,642	△1,909	-	15,784	12,107	3,584	93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9,663	1,466	△1,073	-	20,056	11,234	8,785	37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2,023	751	-	-	2,774	1,795	0	979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38,760	15,359	△1,806	-	52,313	40,262	12,029	22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200	-	-	-	200	-	0	200
정책연구비	394	128	-	-	522	470	36	16
광역도시계획 수립	288	346	-	-	634	395	110	129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06	-	3	-	109	103	0	6
행복도시건설 홍보	482	-	-	-	482	466	0	16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290	-	-	-	290	289	0	1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615	-	-	-	1,615	1,552	0	63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7,770	-	-	-	7,770	7,769	0	1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964	-	-	-	964	-	0	964
자족기능유치지원	552	51	±1	-	603	460	70	73
종합사업관리	1,882	-	-	-	1,882	1,849	0	33
행복도시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	700	-	-	700	-	0	700
기본경비 등 ³⁾	17,594	32	△3	-	17,623	16,914	142	568

※ 자료: 행복청

2) 내역변경, 세목변경 포함

3) 기본경비, 인건비, 공무원연금부담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878억 2,100만원(예산현액의 32.3%)으로,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미지급금 이월 등이고, 주요 사업별 이월액은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470억 5,700만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122억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120억 2,900만원임.

불용액은 39억 5,800만원(예산현액의 1.5%)으로, 불용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이고, 주요 사업별 불용액은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9억 7,900만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9억 6,400만원, 행복도시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7억원임.

한편, 2023년도 전용액은 89억 3,500만원(예산액의 4.0%)으로 도담어진지구대 건립 등 적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 등 부족분 확보가 주된 전용 사유임.

3. 재무결산

2023년도말 행복청 소관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2조 802억 300만원이고, 부채는 3억 4,6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 798억 5,700만원임.

자산은 전년 대비 3,072억 2,800만원(12.9%) 감소⁴⁾하였는데,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무상관리전환 등으로 발생한 일반유형자산 감소 등⁵⁾에 따른 것임.

【 2023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 감	
				금액 (A-B)	비율 [(A-B)/B]
재정 상태	I. 자산	2,080,203	2,387,431	△307,228	△12.9
	II. 부채	346	32	314	981.3
	III. 순자산(I - II)	2,079,857	2,387,399	△307,542	△12.9
재정 운영표	I. 프로그램순원가	155,769	127,140	28,629	22.5
	II. 관리운영비	31,563	23,000	8,563	37.2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501	89	412	462.9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186,830	150,050	36,780	24.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86,830	150,050	36,780	24.5

4) 전년 대비 자산 증감 내역: ① 유동자산(△11억 7,900만원), ② 일반유형자산(△2,890억 1,800만원), ③ 사회기반시설(△172억 5,100만원), ④ 무형자산(△5,500만원), ⑤ 기타비유동자산(2억 7,500만원)

5) 일반유형자산은 전년 대비 2,890억 1,800만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토지(세종헬기장, 아트센터, 4-1생활권 및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전환 및 토지 자산재평가) 172억 5,800만원 감소, 건물(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19특수구조단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관리전환 등) 2,285억 4,200만원 감소 등임.

구 분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 감	
				금액 (A-B)	비율 [(A-B)/B]
순자산 변동표	I. 기초순자산	2,387,399	2,417,067	△29,668	△1.2
	II. 재정운영결과	186,830	150,050	36,780	24.5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21,518	297,166	△418,684	△140.9
	IV. 조정항목	806	△176,785	177,591	100.5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079,857	2,387,399	△307,542	△12.9

※ 자료: 행복청

재정운영결과는 1,868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억 8,000만원 (24.5%)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수익)는 1,55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억 2,900만원(22.5%) 증가하였음.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2조 3,873억 9,9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1,868억 3,000만원)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1,215억 1,800만원) 및 조정항목(8억 600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기초순자산보다 3,075억 4,200만원 (△12.9%)이 감소한 2조 798억 5,700만원임.

새 만 금 개 발 청 소 관

1. 총 괄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가. 세 입

새만금개발청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9억 3,800만원이고 79억 9,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0.7%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9.4% 감소 하였음.

【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수납액 (B)	예산액 대비 수납률(B/A)	전년도 수납액(C)	전년도 수납액 대비 증감률 [(B-C)/C]
세입합계	7,938	7,938	7,997	100.7	9,920	△19.4
일반회계	7,869	7,869	7,974	101.3	9,733	△18.1
균특회계	69	69	23	33.9	187	△87.5

※ 자료: 새만금개발청

나. 세 출

새만금개발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만 편성되어 있고,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의 세출예산액은 1,483억 6,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2억 7,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36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353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1%이며, 집행액은 전년도 대비 44.7% 감소하였음.

【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전년도 집행액(C)	전년도 대비 증감률 {(B-C)/C}
일반회계	148,369	5,276	153,645	135,380	88.1	244,994	△44.7

※ 자료: 새만금개발청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8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6억 2,700만원 중 79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36억 5,4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8.6%이며, 미수납 사유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분할납부에 따른 납기 미도래분 등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C-A)
합 계	7,869	11,627	7,974	-	3,654	105
토지대여료	1,720	2,069	1,280	-	788	△440
기타재산이자수입	-	51	51	-	-	51
과 태 료	-	2	2	-	-	2
징계부과금	-	-	-	-	-	-
위 약 금	-	23	23	-	-	23
기타경상이전수입	-	532	532	-	-	532
면허료 및 수수료	6,102	8,885	6,020	-	2,865	△82
기타잡수입	47	65	65	-	-	18

※ 자료: 새만금개발청

2) 세 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83억 6,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536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35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73억 6,300만원임.

주요 사업별 집행액은 남북도로 1단계 건설 111억 1,600만원, 남북도로 2단계 건설 736억 1,100만원, 상수도시설 건설지원 121억 5,600만원 등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48,369	153,645	135,380	902	17,363
남북도로 1단계 건설	10,961	11,251	11,116	0	135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0	2,700	2,669	0	31
남북도로 2단계 건설	74,073	74,103	73,611	0	491
새만금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1,800	1,800	1,468	202	130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지원	16,912	16,912	12,156	0	4,756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836	836	817	0	19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	836	836	836	0	0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472	472	472	0	0
새만금 에코슈벨트 조성	0	1,634	1,418	0	216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1,034	1,413	1,103	310	0
새만금호 지형 지질 및 토질특성에 관한 조사	0	169	169	0	0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3,642	3,642	1,030	341	2,271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997	3,997	3,997	0	0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467	467	414	0	53
새만금투자유치지원	16,097	16,097	6,999	5	9,094
새만금개발정책연구(R&D)	836	836	796	39	1
행정정보망 구축(정보화)	975	1,049	1,048	0	1
인건비	11,386	11,356	11,288	-	68
기본경비	4,045	4,075	3,974	4	96

※ 자료: 새만금개발청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00만원(예산현액의 0.6%)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 등이고, 주요 사업별 이월액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3억 4,100만원, 문화관광활성화지원 2억 200만원,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3억 1,000만원임.

불용액은 173억 6,300만원(예산현액의 11.3%)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고, 주요 사업별 불용액은 투자유치지원 90억 9,400만원, 상수도시설 건설 47억 5,600만원임.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600만원 중 2,300만원을 수납하고 3,2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1.1%이며, 미수납분은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토지대여료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하였음.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C-A)
합 계	69	56	23	-	32	△46
토지대여료	69	56	23	-	32	△46

※ 자료: 새만금개발청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없음.

3. 재무결산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1조 6,014억 1,500만원이고, 부채는 18억 800만원임. 순자산은 1조 5,996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1억 9,300만원(4.3%)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공정률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증가(2,034억 1,500만원) 및 일반유형자산 감소(1,572억 4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 2023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무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 감	
				금액(A-B)	비율 [(A-B)/B]
재정 상태표	I. 자 산	1,601,415	1,541,189	60,226	3.9
	II. 부 채	1,808	7,776	△5,968	△76.7
	III. 순자산(I-Ⅱ)	1,599,606	1,533,413	66,193	4.3
재정 운영표	I. 프로그램순원가	49,102	17,489	31,613	180.8
	II. 관리운영비	21,697	20,393	1,304	6.4
	III. 비배분비용	470	-	470	-
	IV. 비배분수익	7,552	37,164	△29,612	△79.7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63,717	719	62,998	8,761.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63,717	719	62,998	8,761.9
순자산 변동표	I. 기초순자산	1,533,413	1,259,934	273,479	21.7
	II. 재정운영결과	63,717	719	62,998	8,761.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29,932	238,768	△108,836	△45.6
	IV. 조정항목	△22	35,429	△35,451	△100.1
	V. 기말순자산 (I-II+III+IV)	1,599,606	1,533,413	66,193	4.3

※ 자료: 새만금개발청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637억 1,7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29억 9,800만원(8,761.9%) 증가하였으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1조 5,334억 1,3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637억 1,7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1,299억 3,200만원)과 조정항목(△2,200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기초순자산보다 661억 9,300만원(4.3%)이 증가한 1조 5,996억 600만원임.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전문위원 : 곽현준)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총지출 기준 예산현액 55억 4,597억원 중 51조 6,199억원을 집행(93.1%)하고, 6,624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조 1,774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 우선, 예산 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일반회계)은 디지털 트윈국토 기술 활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시범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3~4분기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74%(33억 3,100만원)의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일반회계) 사업 중 건축물생애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내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감리비를 포함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정보시스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낙찰차액을 통해 충당하였는바, 향후 감리비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성장촉진지역 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주민 갈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행동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선행 절차의 문제가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재생씨앗융자(주택도시기금) 사업은 최근 4년 간 당초 기금 운용계획 대비 30% 이상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가 확정된 기금의 내용에 대한 사실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바, 정확한 추계를 위해 수요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경기 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 국토조사 및 지명(일반회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토조사 및 DB 구축’ 사업은 「국토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무응찰 또는 단독입찰 등으로 인해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사실상 국토연구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등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설기계임대료채납신고센터운영(일반회계) 사업은 건설기계임대료 채납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과 상여금 지급이 실제 업무 실적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및 목적이 실제 집행과 부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일반회계) 사업 중 포상금 제도는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계약, 불법하도급 등과 같은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위반 신고가 총 289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거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요건 등을 정비하는 등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실행행률이 각각 50%대로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성과지표인 ‘주민만족도’는 매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 등, 해당 성과지표가 성과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표인바,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 내역사업은 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신규 이자 지원이 중단되었고, 지원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대책 및 단독주택·비주거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들의 가입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2023년도 실행행률이 23.9%에 불과하였는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일반회계) 사업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내역사업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2022. 3. 17. 시행)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에 99.5% 불용에 이어 2023회계연도에도 96.6%가 불용(8억 3,100만원)되었는바, 향후 제도 홍보 및 사전 컨설팅 등 사업 수요를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건축안전(일반회계) 사업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내역사업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실행행률이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성능보강이 사업 종료 기한인 2025년도 말까지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차세대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이와는 관련성이 적은 LH 혁신방안 마련을 이유로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주거급여 지원 정책연구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어 온 결과 2023년에는 전액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비정상거처에서 정상거처로의 ‘이사비 지원’ 예산은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여 실행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집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가구매입임대 용자 및 출자(주택도시기금) 사업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의결한 개정법률을 계기로 매입임대 실적을 대폭 개선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주택도시기금) 사업은 2023년도에 집행 실적이 없고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대출금리가 크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용자 수요가 계속 부족할 우려가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용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유지 시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국립박물관단지 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과도하게 책정된 여비, 수당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하향 정비할 필요가 있고,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중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함에 따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 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일반회계) 사업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보고하여 공시되어야 하는데도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일반회계) 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는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용역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예산 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 고속도로조사설계(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영일만 횡단대교 설계 예산 5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이는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된 법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후 총사업비 심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추가적인 절차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국토교통부는 도로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 드론 인증센터 구축(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시공사 간 계약 해제로 인하여 예산현액 전액(38억 4,700만원)이 이월되면서 전년도 이월액(21억 6,200만원)의 재이월이 발생

하였는데, 이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재이월로 볼 수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은 교통회계 상 공항계정의 세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상 공항계정의 세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법의 개정 또는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국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의 단위사업 중 17개의 세부사업에서 본예산에 상당하는 규모(70% 이상)의 예산을 전용·조정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하였는데, 이러한 예산 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향후 각 사업의 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예산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일반회계)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을 위해 육안검사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예산의 목적과 다른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둘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대중교통시책 평가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참여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환류 등이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평가사업의 참여율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자철도운영지원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노선이 여러 구간으로 구분되어 철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향후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연계구간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에 대한 사전 연구·설계를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일반회계) 사업은 시간대별 주차정보 공유 부족에 따른 배회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에너지 낭비 및 대기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차난 해결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형 상업시설 등 민영주차장의 운영시간·요금 등의 운영정보와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현황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마일리지를 감액 지급하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지역별로 국민들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율자동차 상용화(일반회계) 사업 중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 결과 14개의 지구 중 약 43%에 달하는 6개의 지구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는 등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친환경 물류지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녹색물류전환 내역사업은 그 성과지표가 보조금의 집행행위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 내역사업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이므로, 성과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 미세먼지 감축량 등으로 변경·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산 절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친환경적 목표 달성이 미흡*한바, 사업비 대비 저감계수 등 사업 효과가 좋은 사업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량(톤CO₂-eq)) (2020) 14,045, (2021) 7,650, (2022) 5,493, (2023) 5,785
(미세먼지 감축량(kg)) (2020) 65,788, (2021) 37,083, (2022) 25,933, (2023) 25,043

- 피해자 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업의 홍보사업 중 추석격려용품지원과 김장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어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셋째,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일반철도 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예산인데,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교부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50.4%)하고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유보액 규모가 과도한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2) 2조 782억원, (2023) 1조 8,588억원

- 도시철도 건설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전체 예산액(4,560억 4,500만원)의 45.5%에 달하는 대규모의 불용액(2,074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공항 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총사업비 협의 등과 같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지연 및 적정성 검토 등으로 대규모 이월(325억원) 및 불용(32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광역BRT 구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비를 교부하여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성남 S-BRT(5억원), 공주-세종 BRT(19억원)

- 이와 같은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긴급하거나 중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통사고예방지원(일반회계) 사업 중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내역사업은 부지확보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교부되었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등 지속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독려를 통해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 내역사업은 실집행률이 61.2%로 저조하며 대규모 이월(753억 100만원)이 일어난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일반회계)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건축기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27억 4,000만원)을 대부분 이월(27억 3,600만원)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던바, 국토교통부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일반회계) 사업은 1차연도인 2023년도부터 실집행이 저조하여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바, 광역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도(2027.1월 시행)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 대체토론의 요지

- 2023회계연도에서 이월 및 불용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을 면밀히 편성할 필요
-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약정 및 다가구 매입 등의 목표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특례보증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확대, 8.8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계대출 증가 억제,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새만금SOC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신공항 등 사업 지연, 예산 불용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 마련 필요
- 도심융합특구사업이 현재 진척이 없는데,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도심융합특구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변경 최소화할 필요
- LH가 채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부채비율이 2027년까지 200%를 계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고자산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추진의 경우 과도한 전용 지양 및 국회의 승인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사전청약 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 SOC적정성 검토로 인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안 및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도로건설 사업의 불용액 이·전용액이 과다하므로 정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할 필요
- 중부내륙지선 통로암거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통로암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통로암거 개선을 추진할 필요
- 구로역 사고 관련 사측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가족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
- 고속국도건설사업 추진 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간 비용부담 비율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
-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실행률이 저조하고 전국 도입률도 40%(2023년말 기준)로 2021년도 도입목표인 42%에도 못 미치는바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전기차 화재 대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리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알뜰교통카드에서 K-Pas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추가 요구사항을 보완할 필요
-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티웨이 항공으로의 노선 이관과 관련하여 티웨이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계획 요구 및 승객 안전·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63건의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함.
-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1건, 주의 39건 및 제도개선 96건 등 총 15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주택공급통계 오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음.
 - 분양주택(융자) 사업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본 청약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운영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 건축안전사업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예산지원의 유효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 국토 공간정보 정책 지원 사업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수요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음.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하여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음.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상적 경비 이월을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VII. 심사결과

- 원안의결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IX. 결산시정요구사항

<붙 임>

2023회계연도 결산 소위심사 결과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49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토교통부	-	-	21	39	96	(14)	142
국토 분야	-	-	13	24	48	(6)	79
교통 분야	-	-	8	15	48	(8)	6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	-	2	1	-	3
새만금개발청	-	-	-	2	2	-	4
합계	-	-	21	43	99	(14)	149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기준 예산액은 54조 6,616억원으로, 그 중 3조 1,774억원이 불용되었음 - 총계 기준 세출예산(기금 제외) 현액은 36조 5,390억원으로, 그 중 4조 4,982억원이 불용되었음 ○ 경기 둔화 국면에 정부 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소비·생산·소득·고용 등 국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예산 불용은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인 만큼 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입 미수납 대책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원으로, 15조 8,525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조 2,247억 1,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7%)되고, 83억 6,3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1조 6,194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연도별 미수납액은 2019년 9,750억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1조 6,194억원으로 2019년 대비 66.1%가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1년 94.4%에서 2023년에는 89.7%까지 감소하였음 【 2019~2023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예산액</th><th>예산현액</th><th>징수결정액 (A)</th><th>수납액 (B)</th><th>수납률 (B/A)</th><th>불납 결손액</th><th>미수납액</th></tr><tr><td>2019</td><td>15,465,891</td><td>15,389,358</td><td>16,189,436</td><td>15,205,304</td><td>93.9</td><td>9,124</td><td>975,008</td></tr><tr><td>2020</td><td>15,276,258</td><td>15,411,135</td><td>16,608,479</td><td>15,500,048</td><td>93.3</td><td>4,108</td><td>1,104,323</td></tr><tr><td>2021</td><td>20,722,276</td><td>20,494,875</td><td>21,633,321</td><td>20,416,197</td><td>94.4</td><td>7,645</td><td>1,209,480</td></tr><tr><td>2022</td><td>16,412,982</td><td>15,951,474</td><td>17,731,875</td><td>16,255,959</td><td>91.7</td><td>8,024</td><td>1,467,892</td></tr><tr><td>2023</td><td>14,754,665</td><td>14,754,665</td><td>15,852,517</td><td>14,224,719</td><td>89.7</td><td>8,363</td><td>1,619,435</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 미수납액 1조 6,194억원 중 89.6%인 1조 4,504억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조 2,317억원은 지역자율계정에서, 나머지 2,187억원은 지역지원계정에서 발생하였음 - 가장 큰 미수납액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법정부담금으로 1조 1,72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동 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법정부담금이 2,138억원이 발생하였음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19	15,465,891	15,389,358	16,189,436	15,205,304	93.9	9,124	975,008	2020	15,276,258	15,411,135	16,608,479	15,500,048	93.3	4,108	1,104,323	2021	20,722,276	20,494,875	21,633,321	20,416,197	94.4	7,645	1,209,480	2022	16,412,982	15,951,474	17,731,875	16,255,959	91.7	8,024	1,467,892	2023	14,754,665	14,754,665	15,852,517	14,224,719	89.7	8,363	1,619,435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19	15,465,891			15,389,358	16,189,436	15,205,304	93.9	9,124	975,008																																										
2020	15,276,258	15,411,135	16,608,479	15,500,048	93.3	4,108	1,104,323																																														
2021	20,722,276	20,494,875	21,633,321	20,416,197	94.4	7,645	1,209,480																																														
2022	16,412,982	15,951,474	17,731,875	16,255,959	91.7	8,024	1,467,892																																														
2023	14,754,665	14,754,665	15,852,517	14,224,719	89.7	8,363	1,619,435																																														
시정요구사항	○ 세입 관련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조 6,19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90%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징수 독려 및 징수 실적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에는 69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49개(71%)에 불과함 - 세부적으로는 ①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84.6% ②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 42.9% ③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00% ④국가교통 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 부가가치 제고 75.0% ⑤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SOC 구축 66.7% ⑥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증진 100%임 ○ 서민주거복지 향상 관련하여서는 14개의 세부사업 중 8개가 미달되어 42.9%라는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택공급량에서 목표가 미달성됨 - 주택공급량의 경우 준공기준이 아닌 사업승인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시장과 괴리된 성과발표와 주거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업승인도 줄어들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제고할 것		
4	예·결산 심의대상 사업과 성과목표관리 대상 불일치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 자료에서 결산 심의대상 사업과 성과 목표 관리대상 간의 불일치 현상이 발견됨 - 일부 결산 심의대상 사업은 성과지표의 설정 단위로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일부 다른 대상 사업들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며,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실적 및 달성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심사, 결산 심의과정에서는 사실상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되고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수준에서 성과지표가 설정될 경우 세부사업 별로 구체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성과가 배제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를 정하기보다는 측정이 필요한 사업 단위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정하는 등 각 사업의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공요금 선납할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2023년에 각각 5,279만원과 6억 9,589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정의 신속집행 차원에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정의 신속집행 차원에서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연간 약 7~10%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6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도 저출생 대응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1.4조원(43.5%)으로 가장 많은데, 그 중 17조 8,90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86%에 그치고 있음 - 이후 보건복지부 13.4조원, 교육부 6.4조원, 고용노동부 4.8조원 순서이며, 보건복지부(99.7%)와 교육부(99.9%) 등은 예산을 대부분 집행함 ○ 국토교통부 저출생 예산은 대부분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서 타 항목보다 중요성이 강조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공토지 비축 제도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토지 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토지비축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게 될 우려가 있음 - LH가 토지 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축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취득세를 공급가에 포함하여 토지를 매각함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취득세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거나 지방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LH가 고유계정과 별도로 토지은행 계정을 설치하여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비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공공토지 비축 제도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토지 비축 제도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은 12월 22일 한 차례에 불과하여 2023년의 공공토지 비축 제도가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사후승인의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문제가 있음 - 위원회는 토지은행에 대한 예·결산 사항도 심의하는데, 2022년 토지은행 결산 및 2024년 토지은행 예산에 대한 심의 모두 2024년 시작 약 일주일 전인 2023년 12월 22일 서면회의 한 차례로 이루어져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 토지의 선정·관리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공공토지비축에 대한 시행계획 및 토지은행 예·결산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적립금 자본금 전입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공공토지 비축 제도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에 의해 매년 정부 배당 전 당기순 이익의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이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3년 말 기준 8.68 조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실제 토지은행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음 - 공공개발용 공공토지는 LH가 사전 일괄 보상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시행자에게 비축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공급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및 자본비용으로 구성됨 - 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부채)과 자기자본비용(적립금)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데, 토지 비축 사업비용은 대부분 타인자본비용으로 조달되고 있음 【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비축토지 자본비용률(2019~2023) 】 (단위: %, %p) <table><tr><th colspan="3">유형 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 rowspan="5">자 본 비 용 률</td><td rowspan="2">자기자본 비용</td><td>자기자본비용률(A)</td><td>2.31</td><td>1.59</td><td>1.23</td><td>1.72</td><td>3.32</td></tr><tr><td>자기자본비율(B)</td><td>21.04</td><td>24.29</td><td>37.57</td><td>17.23</td><td>4.88</td></tr><tr><td rowspan="2">타인자본 비용</td><td>타인자본비용률(C)</td><td>2.49</td><td>1.72</td><td>1.42</td><td>1.91</td><td>3.81</td></tr><tr><td>타인자본비율(D)</td><td>78.96</td><td>75.71</td><td>62.43</td><td>82.77</td><td>95.12</td></tr><tr><td colspan="2">비율 합계(B+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tr><td colspan="2">자본비용률 합계(A×B)+(C×D)]</td><td>2.45</td><td>1.69</td><td>1.35</td><td>1.88</td><td>3.79</td></tr></table>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적립금은 토지은행의 자본으로 전입될 수 있고, 이로써 자기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23년 말까지 토지은행 자본으로 전입된 적립금은 없음							유형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 본 비 용 률	자기자본 비용	자기자본비용률(A)	2.31	1.59	1.23	1.72	3.32	자기자본비율(B)	21.04	24.29	37.57	17.23	4.88	타인자본 비용	타인자본비용률(C)	2.49	1.72	1.42	1.91	3.81	타인자본비율(D)	78.96	75.71	62.43	82.77	95.12	비율 합계(B+D)		100	100	100	100	100	자본비용률 합계(A×B)+(C×D)]		2.45	1.69	1.35	1.88	3.79
		유형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 본 비 용 률	자기자본 비용	자기자본비용률(A)	2.31	1.59	1.23	1.72	3.32																																																			
		자기자본비율(B)	21.04	24.29	37.57	17.23	4.88																																																			
	타인자본 비용	타인자본비용률(C)	2.49	1.72	1.42	1.91	3.81																																																			
		타인자본비율(D)	78.96	75.71	62.43	82.77	95.12																																																			
	비율 합계(B+D)		100	100	100	100	100																																																			
자본비용률 합계(A×B)+(C×D)]		2.45	1.69	1.35	1.88	3.79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토지은행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배당 전 이익금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공공토지 계획 연차별 조정을 통해 토지은행적립금을 토지은행 계정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개발용 비축토지의 공급가액을 실효적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인 공급가액을 산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관련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소송발생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배상금(310-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배상금(310-02목)’ 은 국가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 현액 557억 5,900만원 중 555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3,200만원이 다음연 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원에 달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배상금(310-02목) 결산 내역을 보면, 2020년 이후 예산액은 205 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2019년 785억원, 2020년 877억원, 2021년에는 1,8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556억원 수준의 배상금을 집행 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예산액 대비 350억원(171.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국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시설물의 하자를 줄이는 등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11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관련 징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103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의 1.3. 대책 당시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였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급격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기인한 부분이 있음 ○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를 이 사업의 2023년도 실적으로 들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일괄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음에도 충분한 대안이 모색 되지 않았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공시가격 조사·결정의 정책 타당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택공시가격조사(1031-3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이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수요 집중이 심화되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침 -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벌어져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나, 2023년 이후 공시가격 반영률을 하향 조정함 - 2023년 5월 비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주택공시가격 140% × 담보인정비율 90%)로 변경되면서, 빌라 등 특정 공동주택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반환보증 가입범위를 초과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불허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비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고 아파트가격은 상승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단독·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 【 2023년~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대비) 】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tr><th>계획</th><th>수정</th><th>계획</th><th>수정</th></tr><tr><td>공동주택</td><td>72.7%</td><td>69.0%</td><td>75.6%</td><td>69.0%</td></tr><tr><td>단독주택</td><td>60.4%</td><td>53.6%</td><td>63.6%</td><td>53.6%</td></tr><tr><td>토지</td><td>74.7%</td><td>65.5%</td><td>77.8%</td><td>65.5%</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	수정	계획	수정	공동주택	72.7%	69.0%	75.6%	69.0%	단독주택	60.4%	53.6%	63.6%	53.6%	토지	74.7%	65.5%	77.8%	65.5%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	수정		계획	수정																														
공동주택	72.7%	69.0%	75.6%	69.0%																														
단독주택	60.4%	53.6%	63.6%	53.6%																														
토지	74.7%	65.5%	77.8%	65.5%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비아파트 시장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대책 없이 공시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정책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을 당해 연도 환수액은 국고에 귀속하고, 차년도 환수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현행 방식이 부적절함 -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03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해당 감사원 지적은 부정수급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라는 취지이지 환수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 여부를 달리 하라는 것이 아니며, 현행 방식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부정수급 환수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2020~2023년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table> <tr> <th>구분</th> <th>환수 결정건수</th> <th>환수 결정금액(A)</th> <th>환수 납부건수</th> <th>환수액</th> <th>미환수액(B)</th> <th>미환수율 (B/A)</th> </tr> <tr> <td>2020</td> <td>9,300</td> <td>3,077</td> <td>8,297</td> <td>2,235</td> <td>841</td> <td>27.3</td> </tr> <tr> <td>2021</td> <td>21,176</td> <td>7,412</td> <td>18,931</td> <td>5,550</td> <td>1,862</td> <td>25.1</td> </tr> <tr> <td>2022</td> <td>20,185</td> <td>6,699</td> <td>17,467</td> <td>4,536</td> <td>2,163</td> <td>32.3</td> </tr> <tr> <td>2023</td> <td>19,210</td> <td>8,386</td> <td>16,025</td> <td>3,927</td> <td>4,458</td> <td>53.2</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금액(A)	환수 납부건수	환수액	미환수액(B)	미환수율 (B/A)	2020	9,300	3,077	8,297	2,235	841	27.3	2021	21,176	7,412	18,931	5,550	1,862	25.1	2022	20,185	6,699	17,467	4,536	2,163	32.3	2023	19,210	8,386	16,025	3,927	4,458	53.2
		구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금액(A)	환수 납부건수	환수액	미환수액(B)			미환수율 (B/A)																																		
2020	9,300	3,077	8,297	2,235	841	27.3																																						
2021	21,176	7,412	18,931	5,550	1,862	25.1																																						
2022	20,185	6,699	17,467	4,536	2,163	32.3																																						
2023	19,210	8,386	16,025	3,927	4,458	53.2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주거급여 관련 정책연구용역 결과 반영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주거급여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실제 정책 반영도가 미흡함 【 최근 5년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정책연구용역 계약 내역 】 (단위 : 천원) <table><tr><th>주제</th><th>완료일</th><th>계약액</th><th>상대방</th></tr><tr><td>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td><td>‘19.12.28</td><td>86,300</td><td>국토연구원</td></tr><tr><td>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td><td>‘20.2.22</td><td>38,875</td><td>한국주거학회</td></tr><tr><td>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연구</td><td>‘21.4.16</td><td>331,300</td><td>국토연구원</td></tr><tr><td>지역 주거복지 정책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td><td>‘21.5.27</td><td>191,928</td><td>국토연구원</td></tr><tr><td>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평가 연구</td><td>‘22.7.31</td><td>330,300</td><td>국토연구원</td></tr><tr><td>택지공모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 연구용역</td><td>‘21.9.30.</td><td>21,000</td><td>국토연구원</td></tr><tr><td>지자체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연구</td><td>‘22.4.26</td><td>136,364</td><td>국토연구원</td></tr><tr><td>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td><td>‘22.4.3</td><td>85,000</td><td>주택산업연구원</td></tr><tr><td>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td><td>‘23.2.8</td><td>89,091</td><td>국토연구원</td></tr><tr><td>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지원</td><td>‘23.4.10</td><td>96,900</td><td>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td></tr><tr><td>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td><td>‘23.12.23</td><td>294,000</td><td>국토연구원</td></tr><tr><td>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td><td>‘23.10.5</td><td>56,445</td><td>한국토지주택연구원</td></tr><tr><td>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td><td>‘23.10.31</td><td>52,364</td><td>국토연구원</td></tr><tr><td>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제고 및 발전방안 연구</td><td>‘25.1.20</td><td>267,000</td><td>국토연구원</td></tr><tr><td>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방안 연구</td><td>‘24.11.27</td><td>178,000</td><td>국토연구원</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주제	완료일	계약액	상대방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19.12.28	86,300	국토연구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	‘20.2.22	38,875	한국주거학회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연구	‘21.4.16	331,300	국토연구원	지역 주거복지 정책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21.5.27	191,928	국토연구원	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평가 연구	‘22.7.31	330,300	국토연구원	택지공모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 연구용역	‘21.9.30.	21,000	국토연구원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연구	‘22.4.26	136,364	국토연구원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	‘22.4.3	85,000	주택산업연구원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23.2.8	89,091	국토연구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지원	‘23.4.10	96,90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23.12.23	294,000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	‘23.10.5	56,445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	‘23.10.31	52,364	국토연구원	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제고 및 발전방안 연구	‘25.1.20	267,000	국토연구원	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방안 연구	‘24.11.27	178,000	국토연구원	
		주제	완료일	계약액	상대방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19.12.28	86,300	국토연구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	‘20.2.22	38,875	한국주거학회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연구	‘21.4.16	331,300	국토연구원																																																																					
지역 주거복지 정책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21.5.27	191,928	국토연구원																																																																					
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상향 지원방안 평가 연구	‘22.7.31	330,300	국토연구원																																																																					
택지공모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 연구용역	‘21.9.30.	21,000	국토연구원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연구	‘22.4.26	136,364	국토연구원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	‘22.4.3	85,000	주택산업연구원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23.2.8	89,091	국토연구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지원	‘23.4.10	96,90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23.12.23	294,000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	‘23.10.5	56,445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	‘23.10.31	52,364	국토연구원																																																																					
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제고 및 발전방안 연구	‘25.1.20	267,000	국토연구원																																																																					
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방안 연구	‘24.11.27	178,000	국토연구원																																																																					
시정요구사항	○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의 충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적기에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비하여 충간소음 분쟁 조정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 접수 현황 】 (단위: 건) <table> <tr> <th>구분</th> <th>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th> <th>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th> </tr> <tr> <td>2023년</td> <td>40</td> <td>44,204</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충간소음에 대한 소음 측정이 가능한 반면, 충간소음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은 없어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현재 충간소음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재 충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충간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분쟁을 접수하는 건수가 많음				구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3년	40	44,204
		구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3년	40	44,204										
시정요구사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충간소음에 대한 측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충간소음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인력운용 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1034-30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 사무국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전용부분 하자에 관한 사건은 최장 90일 이내에, 공용부분의 하자는 최장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최근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은 계속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도의 경우에는 처리건수 4,559건 중 법정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722건(15.8%)에 불과함 【 하자분쟁 사건 법정 처리기간 준수 현황(2021년 ~ 2023년) 】 (단위: 건, %) <table>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접수건수</th> <th colspan="3">처리건수</th> <th rowspan="2">법정 처리기간 준수율(B/A)</th> </tr> <tr> <th>계(A)</th> <th>기간초과</th> <th>기간내처리(B)</th> </tr> <tr> <td>2021</td> <td>7,686</td> <td>4,717</td> <td>2,776</td> <td>1,941</td> <td>41.1</td> </tr> <tr> <td>2022</td> <td>3,027</td> <td>4,370</td> <td>3,738</td> <td>632</td> <td>14.5</td> </tr> <tr> <td>2023</td> <td>3,313</td> <td>4,559</td> <td>3,837</td> <td>722</td> <td>15.8</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B/A)	계(A)	기간초과	기간내처리(B)	2021	7,686	4,717	2,776	1,941	41.1	2022	3,027	4,370	3,738	632	14.5	2023	3,313	4,559	3,837	722	15.8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B/A)																								
계(A)	기간초과			기간내처리(B)																															
2021	7,686	4,717	2,776	1,941	41.1																														
2022	3,027	4,370	3,738	632	14.5																														
2023	3,313	4,559	3,837	722	15.8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 점검을 통해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지방자치단체 집행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 사업으로 도입 ○ 당초 예산액 442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은 2022년 14.2%, 2023년 65.9%로 저조함 - 2022년도 이월액 662억원이 남아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도에 예산 442억원을 전액 교부한 결과, 163억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고, 212억원은 불용하였음 【 2022년 및 2023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6">보조사업자</th></tr><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교부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tr><td>2022</td><td>82,149</td><td>82,149</td><td>82,149</td><td>-</td><td>82,149</td><td>11,644</td><td>66,187</td><td>4,333</td></tr><tr><td>2023</td><td>44,200</td><td>44,200</td><td>44,200</td><td>66,187</td><td>110,387</td><td>72,825</td><td>16,354</td><td>21,208</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82,149	82,149	82,149	-	82,149	11,644	66,187	4,333	2023	44,200	44,200	44,200	66,187	110,387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82,149	82,149	82,149	-	82,149	11,644	66,187	4,333																																			
2023	44,200	44,200	44,200	66,187	110,387	72,825	16,354	21,208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은 보조금 교부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주거비 수준, 소득 기준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034-320)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1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후 매년 변호사 인력 퇴사 및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2021-2023회계연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불용액</th><th>인건비 불용액</th></tr><tr><td>2021</td><td>8,538</td><td>5,844</td><td>68.4</td><td>2,694</td><td>935</td></tr><tr><td>2022</td><td>7,134</td><td>5,433</td><td>76.2</td><td>1,701</td><td>1,104</td></tr><tr><td>2023</td><td>7,134</td><td>5,789</td><td>81.2</td><td>1,345</td><td>1,098</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인건비 불용액	2021	8,538	5,844	68.4	2,694	935	2022	7,134	5,433	76.2	1,701	1,104	2023	7,134	5,789	81.2	1,345	1,098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인건비 불용액																										
		2021	8,538	5,844	68.4	2,694	935																										
2022	7,134	5,433	76.2	1,701	1,104																												
2023	7,134	5,789	81.2	1,345	1,098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의 적정 급여 수준을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건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20	사업관리 철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30만원을 한도로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이 2023년 7월에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였으며,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실행률이 23.7%에 그치고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17.4%(1만 7,113건)로 저조함 * 무주택 청년층의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38.8% 증가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무주택 임차인 보호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5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실집행에 대한 고려 없이 2023년 8월에 일괄 교부하였고, 202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74.1%인 41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집행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2	성과지표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가입 건수의 증가 자체를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 대상인 무주택 청년층이 아닌 전체 가입 건수를 측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 (단위: 만명, %) <table><tr><th>성과지표명</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3 목표치 산출근거</th></tr><tr><td rowspan="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HUG)</td><td>목표</td><td>-</td><td>-</td><td>-</td><td>26</td><td>28</td><td rowspan="3">전년 가입 건수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td></tr><tr><td>실적</td><td>-</td><td>-</td><td>23.7</td><td>31</td><td>-</td></tr><tr><td>달성도</td><td>-</td><td>-</td><td>-</td><td>119</td><td>-</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성과지표명	구분	‘20	‘21	‘22	‘23	‘24	‘23 목표치 산출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HUG)	목표	-	-	-	26	28	전년 가입 건수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	실적	-	-	23.7	31	-	달성도	-	-	-	119	-
		성과지표명	구분			‘20	‘21	‘22	‘23	‘24	‘23 목표치 산출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HUG)	목표	-	-	-	26	28	전년 가입 건수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																										
	실적	-	-	23.7	31	-																											
	달성도	-	-	-	119	-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 및 대상을 고려하여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하여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주택공급통계 오류 재발 방지 및 통계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4244-516),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263-5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의 오류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과소집계되었다가 정정되었음 * 주택 인허가 38.9→42.9만호, 착공 20.9→24.2만호, 준공 31.6→43.6만호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통계 오류 발생원인을 철저히 감사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보조금 교부 시 연내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4270-51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은 예산 전액을 7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집행률은 100%이나, 그 중 4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총 교부액 45억원 중 11억 6,900만원(26%)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 규정」 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이월을 초래 【 최근 3년간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table> <tr> <th>연도</th> <th>예산액</th> <th>집행액 [실집행액]</th> <th>집행률 [실집행률]</th> </tr> <tr> <td>2021</td> <td>3,500</td> <td>3,500 [1,365]</td> <td>100.0 [39.0]</td> </tr> <tr> <td>2022</td> <td>4,900</td> <td>4,900 [2,566]</td> <td>100.0 [52.4]</td> </tr> <tr> <td>2023</td> <td>4,500</td> <td>4,500 [1,169]</td> <td>100.0 [26.0]</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동 시범사업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간의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향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임 *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및 도시문제를 디지털 트윈국토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시범 개발하는 사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2021	3,500	3,500 [1,365]	100.0 [39.0]	2022	4,900	4,900 [2,566]	100.0 [52.4]	2023	4,500	4,500 [1,169]	100.0 [26.0]
		연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2021	3,500	3,500 [1,365]	100.0 [39.0]																		
2022	4,900	4,900 [2,566]	100.0 [52.4]																		
2023	4,500	4,500 [1,169]	100.0 [26.0]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정식 추진하려는 경우 2024년도에 진행 중인 2023년도 이월 보조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연구용역 사업 연례적·관례적 이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4305-3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대부분이 연례적·관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의 이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연구용역 이월 현황 】 <table> <tr> <th>구 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r> <tr> <td>연구용역 발주건수</td> <td>6건</td> <td>7건</td> <td>3건</td> <td>2건</td> </tr> <tr> <td>연구용역 이월건수</td> <td>6건</td> <td>2건</td> <td>3건</td> <td>2건</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구용역 발주건수	6건	7건	3건	2건	연구용역 이월건수	6건	2건	3건	2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구용역 발주건수	6건	7건	3건	2건																			
연구용역 이월건수	6건	2건	3건	2건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이 연례적·관례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엄격한 예산 집행 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6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합리적 성과금(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4308-3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2023년도 업무 처리 실적이 2022년도 대비 저조하였음에도 2022년도와 동일한 성과상여금(1,892만원)이 지급된 것은 사기 진작을 고취하려는 성과상여금의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2019년도에는 1,346만원, 2020년도에는 0원, 2021년도에는 512만원의 성과상여금이 집행되는 등 별도의 기준 없이 성과상여금이 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건설기계임대료 채납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기계임대료채납신고센터운영(4308-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건설기계임대료 채납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임대료 채납에 관한 사항이 건설기계 임대료채납신고센터로의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채납신고가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료채납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8	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투자사업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소관 직접투자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2018년 280억 100만원 에서 2023년 2,813억 9,400만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함 ○ 또한, 정책펀드(GIF·PIS 합계) 조성을 통한 사업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2018년 12억원에서 2023년 4,244억원으로 약 3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투자 사업의 효과적 성공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직접 투자사업 및 정책펀드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직접투자사업 승인금액</td><td>28,001</td><td>74,100</td><td>83,147</td><td>162,750</td><td>143,364</td><td>281,394</td></tr><tr><td>정책펀드 승인금액</td><td>1,200</td><td>32,000</td><td>54,000</td><td>269,600</td><td>388,000</td><td>424,40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직접투자사업 승인금액	28,001	74,100	83,147	162,750	143,364	281,394	정책펀드 승인금액	1,200	32,000	54,000	269,600	388,000	424,400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직접투자사업 승인금액	28,001	74,100	83,147	162,750	143,364	281,394																				
정책펀드 승인금액	1,200	32,000	54,000	269,600	388,000	424,400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정책펀드 조성을 통해 추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전문적으로 추진되고, 그 사업 추진 과정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글로벌인프라 (GIF)펀드 및 글로벌플랜트· 건설·스마트시티 (PIS)펀드의 미투자금액 처리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글로벌인프라(GIF)펀드 4·5·6호의 경우 그 투자기간(2022년 12월까지)이 경과하였음에도 미투자금액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인프라(GIF)펀드 투자 현황 (24년 4월말 기준) 】 <table><tr><th>펀드명</th><th>결성시기</th><th>투자기간</th><th>투자집행</th><th>미투자금액</th><th>미투자율</th></tr><tr><td>GIF 4호</td><td>2017년 9월</td><td>2022년 9월</td><td>218억원</td><td>432억원</td><td>66%</td></tr><tr><td>GIF 5호</td><td>2019년 12월</td><td>2022년 12월</td><td>-</td><td>1,100억원</td><td>100%</td></tr><tr><td>GIF 6호</td><td>2019년 12월</td><td>2022년 12월</td><td>-</td><td>1,100억원</td><td>10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제작성 ○ 또한,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의 경우에는 그 투자기간이 24년 하반기까지 임을 고려하여 글로벌인프라(GIF)펀드와 같이 미투자금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자펀드 투자 현황 (24년 4월말 기준) 】 <table><tr><th>펀드명</th><th>결성시기</th><th>투자기간</th><th>투자집행</th><th>미투자금액</th><th>미투자율</th></tr><tr><td>플랜트</td><td>2020년 9월</td><td>2024년 9월</td><td>1,288억원</td><td>812억원</td><td>38.7%</td></tr><tr><td>인프라</td><td>2020년 9월</td><td>2024년 9월</td><td>2,653억원</td><td>1,847억원</td><td>41.0%</td></tr><tr><td>스마트시티</td><td>2020년 9월</td><td>2024년 9월</td><td>295억원</td><td>2,105억원</td><td>87.7%</td></tr><tr><td>EIF PIS</td><td>2023년 8월</td><td>2025년 8월</td><td>42억원</td><td>1,024억원</td><td>96.1%</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제작성(총 7개 자펀드 중 4개 발췌)			펀드명	결성시기	투자기간	투자집행	미투자금액	미투자율	GIF 4호	2017년 9월	2022년 9월	218억원	432억원	66%	GIF 5호	2019년 12월	2022년 12월	-	1,100억원	100%	GIF 6호	2019년 12월	2022년 12월	-	1,100억원	100%	펀드명	결성시기	투자기간	투자집행	미투자금액	미투자율	플랜트	2020년 9월	2024년 9월	1,288억원	812억원	38.7%	인프라	2020년 9월	2024년 9월	2,653억원	1,847억원	41.0%	스마트시티	2020년 9월	2024년 9월	295억원	2,105억원	87.7%	EIF PIS	2023년 8월	2025년 8월	42억원	1,024억원	96.1%
		펀드명	결성시기			투자기간	투자집행	미투자금액	미투자율																																																		
GIF 4호	2017년 9월	2022년 9월	218억원	432억원	66%																																																						
GIF 5호	2019년 12월	2022년 12월	-	1,100억원	100%																																																						
GIF 6호	2019년 12월	2022년 12월	-	1,100억원	100%																																																						
펀드명	결성시기	투자기간	투자집행	미투자금액	미투자율																																																						
플랜트	2020년 9월	2024년 9월	1,288억원	812억원	38.7%																																																						
인프라	2020년 9월	2024년 9월	2,653억원	1,847억원	41.0%																																																						
스마트시티	2020년 9월	2024년 9월	295억원	2,105억원	87.7%																																																						
EIF PIS	2023년 8월	2025년 8월	42억원	1,024억원	96.1%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GIF)펀드 미투자금액의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의 투자금액이 투자기간 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중 유보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가 글로벌인프라(GIF)펀드 및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 조성을 위하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중 투자되지 않고 유보된 금액은 각각 1,003억 1,400만원, 75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각각 73억원, 38억원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중 유보금 및 이자수입에 대해 향후 유사 목적의 펀드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31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파대피소, 지진대피소 등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대부분을 차지(79,390개 중 98.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건수가 2021년 4,922개소에서 2023년 3,010개소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 중 195개소가 미흡 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및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필요한 법적 권한 미비로 적발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건설 현장직원들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 공사 현장을 적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불시 점검 또는 수시적 현장점검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고 신속·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현장점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33	정책연구비 연례적·관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담당자 관리·평가 시행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기술제도선진화(4318-3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가 연례적·반복적으로 이월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상임위의 지적(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9억 3,0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이월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사업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평가를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4323-30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도의 경우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계약 관련 위반 신고 건수가 총 289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서의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거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지자체 교부금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실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4323-306)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도의 경우 동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25억원 중 8억 7,500만원(35%)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실집행을 저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발주 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집행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출연금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실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건설 BIM 활성화 지원(4326-3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급된 출연금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 실집행률: 2021년 26.4%, 2022년 0.6%, 2023년 66.5%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성과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정책 종합연구(5547-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정책 종합연구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로 ‘제도개선 활용률’ 과 ‘국토계획 평가를 통한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을 설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평가를 통한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지표의 경우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정책 종합연구 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table><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3목표치 산출근거</th><th>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r><tr><td rowspan="3">제도개선 활용률 (단위:%)</td><td>목표</td><td>88.5</td><td>88.5</td><td>88.5</td><td>88.5</td><td>88.5</td><td rowspan="3">최근 3년간(‘20-’ 22) 정책연구용역 중 제도개선 활용률 평균을 감안하여 산정</td><td rowspan="3">(제도개선활용 연구용역/최근2년 내 준공한 연구용역)×100</td></tr><tr><td>실적</td><td>85.7</td><td>87.5</td><td>87.2</td><td>88.8</td><td>-</td></tr><tr><td>달성도</td><td>96.8</td><td>98.9</td><td>99.9</td><td>100</td><td>-</td></tr><tr><td rowspan="3">국토계획평가를 통한 평가대상 계획의 보완 개선율 (단위:%)</td><td>목표</td><td>96.8</td><td>98.9</td><td>98.9</td><td>98.9</td><td>98.9</td><td rowspan="3">최근 3년간(‘20-’ 22)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평균을 감안하여 산정</td><td rowspan="3">(총 반영건수 /총 개선 보완요구 건수)×100 * 전년도 하반기~ 해당연도 상반기</td></tr><tr><td>실적</td><td>75</td><td>75</td><td>77</td><td>73.3</td><td>-</td></tr><tr><td>달성도</td><td>76.5</td><td>77.2</td><td>77.2</td><td>74.1</td><td>-</td></tr></table>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제도개선 활용률 (단위:%)	목표	88.5	88.5	88.5	88.5	88.5	최근 3년간(‘20-’ 22) 정책연구용역 중 제도개선 활용률 평균을 감안하여 산정	(제도개선활용 연구용역/최근2년 내 준공한 연구용역)×100	실적	85.7	87.5	87.2	88.8	-	달성도	96.8	98.9	99.9	100	-	국토계획평가를 통한 평가대상 계획의 보완 개선율 (단위:%)	목표	96.8	98.9	98.9	98.9	98.9	최근 3년간(‘20-’ 22)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평균을 감안하여 산정	(총 반영건수 /총 개선 보완요구 건수)×100 * 전년도 하반기~ 해당연도 상반기	실적	75	75	77	73.3	-	달성도	76.5	77.2	77.2	74.1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제도개선 활용률 (단위:%)	목표	88.5	88.5	88.5	88.5	88.5	최근 3년간(‘20-’ 22) 정책연구용역 중 제도개선 활용률 평균을 감안하여 산정			(제도개선활용 연구용역/최근2년 내 준공한 연구용역)×100																																																		
실적	85.7		87.5	87.2	88.8	-																																																								
달성도	96.8		98.9	99.9	100	-																																																								
국토계획평가를 통한 평가대상 계획의 보완 개선율 (단위:%)	목표	96.8	98.9	98.9	98.9	98.9	최근 3년간(‘20-’ 22) 평가대상계획의 보완 개선율 평균을 감안하여 산정	(총 반영건수 /총 개선 보완요구 건수)×100 * 전년도 하반기~ 해당연도 상반기																																																						
	실적	75	75	77	73.3	-																																																								
	달성도	76.5	77.2	77.2	74.1	-																																																								
시정요구사항	○ 성과목표 달성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연초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용역 발주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시정책 종합연구(56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새로운 도시정책 모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임 ○ 최근 4년간 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2020년 5,300만원에서 2023년 2억 9,300만원으로 연도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도 2020년 90.3%에서 2023년 66.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추진 지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초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당초 예산 대비 전용 과다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5635-3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1년~‘22년 2년 연속 결산에서 이·전용의 최소화를, ‘22년 결산에서는 예비비 122억원 편성을 지적받았으며, ‘23년에는 132억원을 이·전용하였음 ○ 예산편성 당시 추진하려던 공원계획수립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하고, 132억원을 전용하여 새로운 추가과업에 집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전용액 집행내역 】 <table> <tr> <th colspan="2">당초</th> <th colspan="3">변경</th> </tr> <tr> <th>예산액(A)</th> <th>사업내용</th> <th>예산액(B)</th> <th>전용액(B-A)</th> <th>추가과업 등 변경내역</th> </tr> <tr> <td>85억원</td> <td>용산어린이정원내 수공간(관람형 연못) 조성</td> <td>130억원</td> <td>45억원</td> <td>어린이가족을 위한 분수정원으로 조성계획 변경</td> </tr> <tr> <td>-</td> <td>-</td> <td>45억원</td> <td>45억원</td> <td>위해성 저감사업 보강시행</td> </tr> <tr> <td>55억원</td> <td>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개방부지 관리 운영비</td> <td>97억원</td> <td>42억원</td> <td>분수정원 등 추가개방에 따른 시설안내, 안전관리요원 증원 등 관리운영 인력 증원</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예산액(A)	사업내용	예산액(B)	전용액(B-A)	추가과업 등 변경내역	85억원	용산어린이정원내 수공간(관람형 연못) 조성	130억원	45억원	어린이가족을 위한 분수정원으로 조성계획 변경	-	-	45억원	45억원	위해성 저감사업 보강시행	55억원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개방부지 관리 운영비	97억원	42억원	분수정원 등 추가개방에 따른 시설안내, 안전관리요원 증원 등 관리운영 인력 증원
		당초		변경																													
		예산액(A)	사업내용	예산액(B)	전용액(B-A)	추가과업 등 변경내역																											
85억원	용산어린이정원내 수공간(관람형 연못) 조성	130억원	45억원	어린이가족을 위한 분수정원으로 조성계획 변경																													
-	-	45억원	45억원	위해성 저감사업 보강시행																													
55억원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개방부지 관리 운영비	97억원	42억원	분수정원 등 추가개방에 따른 시설안내, 안전관리요원 증원 등 관리운영 인력 증원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의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실수요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5637-304)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은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지 않는 계획 수립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2023년 실집행률은 28.6%에 불과하며, 보조금을 12월 20일~29일에 교부하는 등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는 보조금을 교부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남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선정('23.12.22.)부터 협약체결('23.12.27.), 사업계획 수립('23.12.28.)까지 불과 일주일만 소요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보조금이 전액 이월된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수행 시 지자체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 저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지원 사업 집행을 제고 및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5637-3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 및 2022년도에는 각각 70.7%, 72.0%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48.8%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또한, 동 사업의 연도별 불용액이 2021년도 1억 6,800만원, 2022년도 2억 8,600만원, 2023년도 6억 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지원 사업 중 스마트시티 성과확산 사업의 경우 2022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4억 4,1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2억 3,0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당 사업의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할 경우에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5637-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시범도시 구축 사업의 경우 SPC 설립 지연 및 미설립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하고 재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 -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SPC 설립이 지연되었고,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아직 SPC가 설립조차 되지 않아 사업의 집행 가능성이 저조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이월액 발생 현황 및 SPC 설립 현황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하여 실집행이 저조(세종시 22.6%, 부산시 0%)하고 재이월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됨 ○ 국가시범도시 구축 사업의 경우 2021년, 2022년 국회에서 지적하여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SPC 설립 및 사업 지연 상황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실집행 저조 및 재이월 발생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사업 이·전용 관련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5734-3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통합관리사업’ * 내역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연구비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 내역사업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용도의 예산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 예산의 자산취득비로의 전용은 불가하여 전액 불용한 바 있음 * 공간정보 정책사업의 활성화 및 중복구축 방지 등 총괄·조정을 위한 사업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용도의 예산을 전액 불용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예산 편성 없이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충당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주의할 것		
44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57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 내역사업은 2회계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함 - 2022회계연도 집행률은 0.4%(400만원)에 불과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주의)가 있었으나, 2023회계연도 집행률도 3.4%에 그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신규 편성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었으므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 민간 수요 제고 방안 및 보안심사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5735-303)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은 북한지적원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 집행률은 97.9%이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 - 북한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 사이 제작된 자료로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이 모두 표시된 세부 측량자료로서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 토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정부는 동 자료를 국가중요기록물(영구 기록물)로 지정하여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음 -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당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예산 심사 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것														
46	양질의 전시소장품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시건축박물관 운영(6131-31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시소장품 확보’ 사업은 단가가 낮은 소장품 위주로 확보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고 박물관 전시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소장품 구매를 위한 편성 단가(210만원)에 비해 집행 단가(약 50만원)가 현저히 낮음 【 최근 2년간 전시소장품 확보 현황 】 <table><tr><th>구 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tr><td>2022년</td><td>841백만원 (400점×210만원)</td><td>629백만원 (1,289점×49만원)</td><td>96백만원</td></tr><tr><td>2023년</td><td>4,931백만원 (2,348점×210만원)</td><td>3,742백만원 (6,938점×54만원)</td><td>885백만원</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2년	841백만원 (400점×210만원)	629백만원 (1,289점×49만원)	96백만원	2023년	4,931백만원 (2,348점×210만원)	3,742백만원 (6,938점×54만원)	885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2년	841백만원 (400점×210만원)	629백만원 (1,289점×49만원)	96백만원														
2023년	4,931백만원 (2,348점×210만원)	3,742백만원 (6,938점×54만원)	885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박물관 전시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소장품 구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요한 예산의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기한 내 완료 및 대상 확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당초 화재안전성능보강의 공사비용 지원 기간은 「건축물관리법」 제29조(현행 제29조의2) 및 부칙에 따라 2022년 말까지였으나,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법률 개정(2023. 4. 18.)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다시 연장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예산지원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건축물관리자들의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국회에 유효기간 연장을 재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주의)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특히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집행이 저조하므로, 건축주를 설득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을 제고하고, 아울러 동 사업의 대상을 노후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제도개선)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5개년 중 3개년은 집행률이 20% 미만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지역건축 안전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적극 설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행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금액은 이월액 2억 4,9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22억 4,900만원 중 12억 1,100만원에 그쳐(실행률 53.8%), 예산의 실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의 부진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과 지원 대상이 계측장비 구입 등에 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신청이 저조했던 것에 기인하며, 특히, 이 문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인구 50만명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한 것으로 보임 【 최근 2년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 실행내역 】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7">지방자치단체</th></tr><tr><th>예산액</th><th>집행액 (교부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교부 현액 (A)</th><th>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 집행률 (B/A)</th></tr><tr><td>2022년</td><td>2,000</td><td>1,497</td><td>1,497</td><td>-</td><td>1,497</td><td>1,061</td><td>249</td><td>187</td><td>70.9</td></tr><tr><td>2023년</td><td>2,000</td><td>2,000</td><td>2,000</td><td>249</td><td>2,249</td><td>1,211</td><td>637</td><td>401</td><td>53.8</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2022년	2,000	1,497	1,497	-	1,497	1,061	249	187	70.9	2023년	2,000	2,000	2,000	249	2,249	1,211	637	401	53.8								
		구 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2022년	2,000	1,497	1,497	-	1,497	1,061	249	187	70.9																																																	
2023년	2,000	2,000	2,000	249	2,249	1,211	637	401	53.8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이 부진한 인구 50만명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총괄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3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출계획현액 105조 5,386억원 중 95조 4,377억원이 지출되고 24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조 3,236억원이 불용되었음 ○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회계연도 종료 3일 전인 ‘23.12.28.에 3조 7,448억원 규모(57.6%)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최근 10년간 12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없었던 해가 없으며, 변경 규모 측면에서도 ‘22년에 6조 8,635억원으로 가장 크며, 최근 2년간 변경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3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사업비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일자</th> <th>구분</th> <th>변경 증액(A)</th> <th>변경 감액(B)</th> </tr> <tr> <td>2023.3.7</td> <td>자체변경</td> <td>14,354</td> <td>14,354</td> </tr> <tr> <td>2023.7.7</td> <td>기재부협의</td> <td>783,400</td> <td>783,400</td> </tr> <tr> <td>2023.7.7</td> <td>자체변경</td> <td>108,001</td> <td>108,001</td> </tr> <tr> <td>2023.7.12.</td> <td>기재부협의</td> <td>307,144</td> <td>307,144</td> </tr> <tr> <td>2023.7.28.</td> <td>기재부협의</td> <td>1,509,350</td> <td>1,509,350</td> </tr> <tr> <td>2023.9.26</td> <td>기재부협의</td> <td>300</td> <td>300</td> </tr> <tr> <td>2023.10.17.</td> <td>기재부협의</td> <td>39,279</td> <td>39,279</td> </tr> <tr> <td>2023.12.28.</td> <td>기재부협의</td> <td>3,744,828</td> <td>3,744,828</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6,506,656</td> <td>6,506,656</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2023.3.7	자체변경	14,354	14,354	2023.7.7	기재부협의	783,400	783,400	2023.7.7	자체변경	108,001	108,001	2023.7.12.	기재부협의	307,144	307,144	2023.7.28.	기재부협의	1,509,350	1,509,350	2023.9.26	기재부협의	300	300	2023.10.17.	기재부협의	39,279	39,279	2023.12.28.	기재부협의	3,744,828	3,744,828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2023.3.7	자체변경	14,354	14,354																																						
2023.7.7	기재부협의	783,400	783,400																																						
2023.7.7	자체변경	108,001	108,001																																						
2023.7.12.	기재부협의	307,144	307,144																																						
2023.7.28.	기재부협의	1,509,350	1,509,350																																						
2023.9.26	기재부협의	300	300																																						
2023.10.17.	기재부협의	39,279	39,279																																						
2023.12.28.	기재부협의	3,744,828	3,744,828																																						
합계		6,506,656	6,506,656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관례화되지 않고 그 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는 연말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 및 지출 구조조정 등 기금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 유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며,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58.7조원에서 2021년 76.1조원까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62.6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63.5조원으로 2021년 대비 12.6조원(△16.6%)이 감소하였음 ○ 또한, 2021년 49조원까지 증가했던 기금 여유자금 잔액이 2022년 28.7조원, 2023년에는 19.2조원, 2024.3월에는 13.9조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유자금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지출 구조조정 등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관리 철저 및 환급금 지출 시 별도의 지출사업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국공채발행수입(81-81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공채발행수입은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임 ○ 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으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됨 -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착오로 매입한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되면서 2023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는 해당 매입비용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착오매입 건수는 72.3만건이고 착오매입 규모는 총 2조 6,356억원임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은행을 통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아 매도할 수 있으며, 그 할인비용이 소상공인 등의 부담액이 되는데, 착오매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이 부담한 비용은 1,437억원이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지연배상 이자(이자율 5%) 359억원 등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는 총 1,796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환급금을 ‘기타여유자금운용’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착오매입 환급금의 집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별도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여유자금운용’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의무를 발생시킨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관리에 주의할 것 ○ 부득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지출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해당 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시기금 - 이차보전 지원(1042-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민간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려는 것임 ○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회수되지 않는 사업방식임에도 최근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차보전 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을 살펴 보면, 당초 계획액 기준 2019년 1,903억원에서 2023년 7,656억원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대출수요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켜 왔으며, 변경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178억원에서 2023년 1조 95억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21~2023년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전금리 변동 내역을 보면, 2021년 상반기 이차보전 금리는 1.01% 수준이었으나 시중금리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2.21%까지 증가하였음 【 2021~2023년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전금리 변동 내역 】 (단위: %)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2021년</th> <th colspan="2">2022년</th> <th colspan="2">2023년</th> </tr> <tr> <th>상반기</th> <th>하반기</th> <th>상반기</th> <th>하반기</th> <th>상반기</th> <th>하반기</th> </tr> <tr> <td>보전금리</td> <td>1.01</td> <td>1.34</td> <td>1.68</td> <td>1.86</td> <td>2.21</td> <td>1.96</td> </tr> </table> 주) 보전금리: 생애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한 보전금리 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보전금리	1.01	1.34	1.68	1.86	2.21	1.96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보전금리	1.01	1.34	1.68	1.86	2.21	1.96																								
시정요구사항	○ 직접 융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보증사 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조성 및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임 ○ 동 사업의 2023년 당초 계획액은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액한 수정 계 획액은 3,839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2023년 3,839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출자하였고, 2024년 2월 7,00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 으며, 3월에는 4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였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3조 7,804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 고 있는 상황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체 보증 현황 】 (단위: 건, 억원)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2022년</th> <th colspan="2">2023년</th> <th colspan="2">2024년 7월</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r> <td>보증실적</td> <td>658,911</td> <td>2,346,981</td> <td>789,292</td> <td>2,550,479</td> <td>460,348</td> <td>1,710,884</td> </tr> <tr> <td>보증잔액</td> <td>1,409,461</td> <td>5,962,429</td> <td>1,520,771</td> <td>6,183,161</td> <td>1,552,162</td> <td>6,294,698</td> </tr> <tr> <td>보증사고</td> <td>8,354</td> <td>15,693</td> <td>28,642</td> <td>76,542</td> <td>23,046</td> <td>54,964</td> </tr> <tr> <td>대위변제</td> <td>5,642</td> <td>10,581</td> <td>21,044</td> <td>49,229</td> <td>16,380</td> <td>37,804</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실적	658,911	2,346,981	789,292	2,550,479	460,348	1,710,884	보증잔액	1,409,461	5,962,429	1,520,771	6,183,161	1,552,162	6,294,698	보증사고	8,354	15,693	28,642	76,542	23,046	54,964	대위변제	5,642	10,581	21,044	49,229	16,380	37,804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실적	658,911	2,346,981	789,292	2,550,479	460,348	1,710,884																																								
보증잔액	1,409,461	5,962,429	1,520,771	6,183,161	1,552,162	6,294,698																																								
보증사고	8,354	15,693	28,642	76,542	23,046	54,964																																								
대위변제	5,642	10,581	21,044	49,229	16,380	37,804																																								
시정요구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확인 필요 등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층간소음 성능보강(1131-407)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중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를 구입하거나 시공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60개월간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음 ○ 2023년도 계획액 150억원 중 집행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이 0.7%에 불과함 - 지원 방식이 무상 지원이 아닌 “융자” 이기 때문에 특히 자가가 아닌 전세 가구의 경우 원금을 부담하면서 시공할 유인이 떨어지고, 이 사업의 수단인 소음저감매트가 실제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층간소음의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큰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여기에 속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융자사업보다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확인 필요 등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1131-408)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축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고성능(1·2등급) 바닥구조를 사용하여 리모델링 하는 경우 호당 최대 500만원까지 그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에 신규 편성되었음 ○ 2023년도 계획액 4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집행률 0.0%) - 수요조사 없이 계획안을 편성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행 절차 마련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리모델링 사업자에 제공하는 연 4.0%의 금리가 시중 금리(3~5%)와 비교하여 우대 폭이 크지 않고 무상 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 로 추진되어 주택소유자가 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신청 유인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융자사업보다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분양주택(용자) 사업 관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용자)(1134-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분양주택(용자)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41.3%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당초 ①분양주택, ②청년원가주택, ③역세권첫집 3가지 유형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분양주택만을 신규 유형인 나눔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여 계획과 다르게 집행 -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제도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준비가 미비하였으며, 그 결과 나눔형의 2023년 공급 계획(5.4만호) 대비 실적(9,700호)이 18%에 불과 【 최근 5년간 분양주택(용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 획 액</th><th rowspan="2">이 · 전 용 등</th><th rowspan="2">계 획 현 액 (B)</th><th rowspan="2">집 행 액 (C)</th><th rowspan="2">집 행 률 (C/A)</th><th rowspan="2">집 행 률 (C/B)</th><th rowspan="2">자 체 변 경 비 율 [(B-A)/A]</th><th rowspan="2">불 용</th></tr><tr><th>당 초 (A)</th><th>수 정</th></tr><tr><td>2019</td><td>3,005</td><td>2,291</td><td>△715</td><td>2,291</td><td>2,194</td><td>73.0</td><td>95.8</td><td>△23.8</td><td>97</td></tr><tr><td>2020</td><td>2,705</td><td>1,455</td><td>△1,250</td><td>1,455</td><td>1,449</td><td>53.6</td><td>99.6</td><td>△46.2</td><td>6</td></tr><tr><td>2021</td><td>4,782</td><td>5,672</td><td>890</td><td>5,672</td><td>5,671</td><td>118.6</td><td>100.0</td><td>18.6</td><td>1</td></tr><tr><td>2022</td><td>3,163</td><td>2,031</td><td>△1,132</td><td>2,031</td><td>2,017</td><td>63.8</td><td>99.3</td><td>△35.8</td><td>14</td></tr><tr><td>2023</td><td>13,955</td><td>11,164</td><td>△2,791</td><td>11,164</td><td>5,760</td><td>41.3</td><td>51.6</td><td>△20.0</td><td>5,404</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	계 획 액		이 · 전 용 등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집 행 률 (C/A)	집 행 률 (C/B)	자 체 변 경 비 율 [(B-A)/A]	불 용	당 초 (A)	수 정	2019	3,005	2,291	△715	2,291	2,194	73.0	95.8	△23.8	97	2020	2,705	1,455	△1,250	1,455	1,449	53.6	99.6	△46.2	6	2021	4,782	5,672	890	5,672	5,671	118.6	100.0	18.6	1	2022	3,163	2,031	△1,132	2,031	2,017	63.8	99.3	△35.8	14	2023	13,955	11,164	△2,791	11,164	5,760	41.3	51.6	△20.0	5,404
		연도	계 획 액		이 · 전 용 등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집 행 률 (C/A)	집 행 률 (C/B)	자 체 변 경 비 율 [(B-A)/A]				불 용																																																												
당 초 (A)	수 정																																																																									
2019	3,005	2,291	△715	2,291	2,194	73.0	95.8	△23.8	97																																																																	
2020	2,705	1,455	△1,250	1,455	1,449	53.6	99.6	△46.2	6																																																																	
2021	4,782	5,672	890	5,672	5,671	118.6	100.0	18.6	1																																																																	
2022	3,163	2,031	△1,132	2,031	2,017	63.8	99.3	△35.8	14																																																																	
2023	13,955	11,164	△2,791	11,164	5,760	41.3	51.6	△20.0	5,404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용자) 사업의 사업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급실적을 개선하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물량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보증 - 분양주택(용자)(1134-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분양주택 2023년 누적 공급호수는 4만 7,924호인데, 이 가운데 미분양호수는 5,852호로 미분양률이 12.2%로 나타남 - 최근 5년 중 2019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 - 2021년 미분양률은 1%였으나, 2022년과 2023년 신규 공급 물량에서 미분양 다수 발생 - 주요 미분양 단지로 양주옥정의 경우 미분양률 83%, 익산·울산·인천 등은 미분양률 90% 수준 【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미분양률 현황(LH) 】 (단위: 호, %) <table> <tr>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2">공급호수</th> <th rowspan="2">미분양호수(B)</th> <th rowspan="2">미분양률(B/A)</th> </tr> <tr> <th>연간</th> <th>누적(A)</th> </tr> <tr> <td>2019</td> <td>5,035</td> <td>5,035</td> <td>1,333</td> <td>26.5</td> </tr> <tr> <td>2020</td> <td>12,162</td> <td>17,197</td> <td>1,051</td> <td>6.1</td> </tr> <tr> <td>2021</td> <td>16,439</td> <td>33,636</td> <td>352</td> <td>1.0</td> </tr> <tr> <td>2022</td> <td>8,632</td> <td>42,268</td> <td>4,962</td> <td>11.7</td> </tr> <tr> <td>2023</td> <td>5,656</td> <td>47,924</td> <td>5,852</td> <td>12.2</td> </tr> </table>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	공급호수		미분양호수(B)	미분양률(B/A)	연간	누적(A)	2019	5,035	5,035	1,333	26.5	2020	12,162	17,197	1,051	6.1	2021	16,439	33,636	352	1.0	2022	8,632	42,268	4,962	11.7	2023	5,656	47,924	5,852	12.2
		연도	공급호수		미분양호수(B)				미분양률(B/A)																														
연간	누적(A)																																						
2019	5,035	5,035	1,333	26.5																																			
2020	12,162	17,197	1,051	6.1																																			
2021	16,439	33,636	352	1.0																																			
2022	8,632	42,268	4,962	11.7																																			
2023	5,656	47,924	5,852	12.2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입지선호도나 수요를 고려한 공급을 통한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보증 - 분양주택(용자)(1134-40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서 수요자에게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지연 문제 및 분양가 상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사전청약 99개 단지 총 5만 2,000호 중 2023년 말 기준 본청약 완료 단지는 13개 단지 총 6,915호이며, 공지된 시기에 본청약이 이루어진 단지는 1개 단지에 불과함 - 본청약 완료 13개 단지의 경우, 실제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지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8,698만원(12.74%) 인상됨 - 아울러, 본청약 예정일이 1달 정도 남았을 때 본청약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및 임대차 계약 일정에 영향을 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낮추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여전히 인상된 분양가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본청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본청약 지연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통지하며, 사업장이 취소된 곳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하여 현재 지원대책과 별개로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국민임대(용자)(1332-401), 공공임대(용자)(1333-401), 행복주택(용자)(1335-401),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전세임대(용자)(1337-401), 통합공공임대 (용자)(1338-406),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주택출자(1440-408),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함																																																																																																					
			【 2023회계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계 획 액</th><th rowspan="2">이·전용 등(B)</th><th rowspan="2">계 획 현 액</th><th rowspan="2">집 행 액 (C)</th><th rowspan="2">변경 비율 (B/A)</th><th rowspan="2">당초 대비 집행률 (C/A)</th></tr><tr><th>당초(A)</th><th>수정</th></tr><tr><td>영구임대출자</td><td>179,683</td><td>133,683</td><td>△46,000</td><td>133,683</td><td>101,174</td><td>△25.6</td><td>56.3</td></tr><tr><td>국민임대(용자)</td><td>300,114</td><td>157,445</td><td>△142,669</td><td>157,445</td><td>148,344</td><td>△47.5</td><td>49.4</td></tr><tr><td>국민임대출자</td><td>219,221</td><td>68,271</td><td>△150,950</td><td>68,271</td><td>56,313</td><td>△68.9</td><td>25.7</td></tr><tr><td>행복주택(용자)</td><td>1,004,089</td><td>620,089</td><td>△384,000</td><td>620,089</td><td>536,346</td><td>△38.2</td><td>53.4</td></tr><tr><td>행복주택출자</td><td>684,607</td><td>461,607</td><td>△223,000</td><td>461,607</td><td>421,615</td><td>△32.6</td><td>61.6</td></tr><tr><td>공공임대(용자)</td><td>117,958</td><td>251,527</td><td>133,569</td><td>251,527</td><td>246,578</td><td>113.2</td><td>209.0</td></tr><tr><td>통합공공임대(용자)</td><td>1,190,038</td><td>522,404</td><td>△667,634</td><td>522,404</td><td>516,442</td><td>△56.1</td><td>43.4</td></tr><tr><td>통합공공임대출자</td><td>1,070,374</td><td>570,374</td><td>△500,000</td><td>570,374</td><td>456,569</td><td>△46.7</td><td>42.7</td></tr><tr><td>다가구매입(용자)</td><td>3,237,000</td><td>1,533,120</td><td>△1,703,880</td><td>1,533,120</td><td>1,461,701</td><td>△52.6</td><td>45.2</td></tr><tr><td>다가구매입출자</td><td>2,839,300</td><td>2,698,784</td><td>△140,516</td><td>2,698,784</td><td>2,471,225</td><td>△4.9</td><td>87.0</td></tr><tr><td>전세임대(용자)</td><td>4,174,950</td><td>5,087,730</td><td>912,780</td><td>5,087,730</td><td>4,780,620</td><td>21.9</td><td>114.5</td></tr></table>								사업명	계 획 액		이·전용 등(B)	계 획 현 액	집 행 액 (C)	변경 비율 (B/A)	당초 대비 집행률 (C/A)	당초(A)	수정	영구임대출자	179,683	133,683	△46,000	133,683	101,174	△25.6	56.3	국민임대(용자)	300,114	157,445	△142,669	157,445	148,344	△47.5	49.4	국민임대출자	219,221	68,271	△150,950	68,271	56,313	△68.9	25.7	행복주택(용자)	1,004,089	620,089	△384,000	620,089	536,346	△38.2	53.4	행복주택출자	684,607	461,607	△223,000	461,607	421,615	△32.6	61.6	공공임대(용자)	117,958	251,527	133,569	251,527	246,578	113.2	209.0	통합공공임대(용자)	1,190,038	522,404	△667,634	522,404	516,442	△56.1	43.4	통합공공임대출자	1,070,374	570,374	△500,000	570,374	456,569	△46.7	42.7	다가구매입(용자)	3,237,000	1,533,120	△1,703,880	1,533,120	1,461,701	△52.6	45.2	다가구매입출자	2,839,300	2,698,784	△140,516	2,698,784	2,471,225	△4.9	87.0	전세임대(용자)	4,174,950	5,087,730	912,780
사업명	계 획 액		이·전용 등(B)	계 획 현 액	집 행 액 (C)	변경 비율 (B/A)	당초 대비 집행률 (C/A)																																																																																																	
	당초(A)	수정																																																																																																						
영구임대출자	179,683	133,683	△46,000	133,683	101,174	△25.6	56.3																																																																																																	
국민임대(용자)	300,114	157,445	△142,669	157,445	148,344	△47.5	49.4																																																																																																	
국민임대출자	219,221	68,271	△150,950	68,271	56,313	△68.9	25.7																																																																																																	
행복주택(용자)	1,004,089	620,089	△384,000	620,089	536,346	△38.2	53.4																																																																																																	
행복주택출자	684,607	461,607	△223,000	461,607	421,615	△32.6	61.6																																																																																																	
공공임대(용자)	117,958	251,527	133,569	251,527	246,578	113.2	209.0																																																																																																	
통합공공임대(용자)	1,190,038	522,404	△667,634	522,404	516,442	△56.1	43.4																																																																																																	
통합공공임대출자	1,070,374	570,374	△500,000	570,374	456,569	△46.7	42.7																																																																																																	
다가구매입(용자)	3,237,000	1,533,120	△1,703,880	1,533,120	1,461,701	△52.6	45.2																																																																																																	
다가구매입출자	2,839,300	2,698,784	△140,516	2,698,784	2,471,225	△4.9	87.0																																																																																																	
전세임대(용자)	4,174,950	5,087,730	912,780	5,087,730	4,780,620	21.9	114.5																																																																																																	
시정요구사항	※자료: 국토교통부																																																																																																							
	○ 유형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 -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임대주택지원(용·출자) 프로그램 내에 편성 - 이에 따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고객만족도’, ‘미임대율’ 두 가지 성과지표만 설정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하고, 효과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공공임대주택 사업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국민임대(융자)(1332-401), 공공임대(융자)(1333-401), 행복주택(융자)(1335-401),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다가구매입 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 주택출자(1440-408),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착공 실적이 부진하며, 사업취소 물량이 급증함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착공 실적이 특히 부진하며, 다가구매입임대 공급실적 부진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전체 미착공물량 4만 4,777호 중 3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이 2만 6,771호로 전체의 60%를 차지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취소 물량은 총 1만 7,338호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 【 2023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계획 대비 실적(LH) 】 (단위: 호,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사업승인</th><th colspan="3">착공</th><th colspan="3">준공</th></tr><tr><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r><tr><td>영구임대</td><td>50</td><td>50</td><td>100.0</td><td>941</td><td>253</td><td>27.0</td><td>2,788</td><td>2,470</td><td>88.6</td></tr><tr><td>국민임대</td><td>-</td><td>-</td><td></td><td>1,864</td><td>618</td><td>33.2</td><td>5,892</td><td>5,856</td><td>99.4</td></tr><tr><td>행복주택</td><td>629</td><td>634</td><td>100.8</td><td>5,930</td><td>2,885</td><td>48.7</td><td>21,010</td><td>21,666</td><td>103.1</td></tr><tr><td>공공임대</td><td>5,674</td><td>13,726</td><td>241.9</td><td>158</td><td>-</td><td>0.0</td><td>939</td><td>939</td><td>100.0</td></tr><tr><td>통합임대</td><td>25,114</td><td>23,772</td><td>94.7</td><td>2,262</td><td>354</td><td>15.6</td><td>1,181</td><td>1,181</td><td>100.0</td></tr><tr><th>구분</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실적</th><th colspan="3">달성률</th></tr><tr><td>다가구 매입임대</td><td colspan="3">27,846</td><td colspan="3">6,162</td><td colspan="3">22.1</td></tr><tr><td>전세임대</td><td colspan="3">30,160</td><td colspan="3">30,570</td><td colspan="3">101.4</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분	사업승인			착공			준공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영구임대	50	50	100.0	941	253	27.0	2,788	2,470	88.6	국민임대	-	-		1,864	618	33.2	5,892	5,856	99.4	행복주택	629	634	100.8	5,930	2,885	48.7	21,010	21,666	103.1	공공임대	5,674	13,726	241.9	158	-	0.0	939	939	100.0	통합임대	25,114	23,772	94.7	2,262	354	15.6	1,181	1,181	100.0	구분	계획			실적			달성률			다가구 매입임대	27,846			6,162			22.1			전세임대	30,160			30,570			101.4				
		구분	사업승인			착공			준공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영구임대	50	50	100.0	941	253	27.0	2,788	2,470	88.6																																																																																																								
국민임대	-	-		1,864	618	33.2	5,892	5,856	99.4																																																																																																								
행복주택	629	634	100.8	5,930	2,885	48.7	21,010	21,666	103.1																																																																																																								
공공임대	5,674	13,726	241.9	158	-	0.0	939	939	100.0																																																																																																								
통합임대	25,114	23,772	94.7	2,262	354	15.6	1,181	1,181	100.0																																																																																																								
구분	계획			실적			달성률																																																																																																										
다가구 매입임대	27,846			6,162			22.1																																																																																																										
전세임대	30,160			30,570			101.4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착공 및 사업취소 현황 및 재 승인 사업들의 지연현황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공공임대주택 미임대율 개선방안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시기금 - 국민임대(용자)(1332-401), 공공임대(용자)(1333-401), 행복주택(용자)(1335-401),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 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주택출자(1440-4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6개월 이상 미임대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미임대 현황 】 (단위: 호, %) <table><tr><th rowspan="3">유형</th><th colspan="4">2022년 말 기준</th><th colspan="4">2023년 말 기준</th></tr><tr><th rowspan="2">재고량</th><th colspan="3">미임대</th><th rowspan="2">재고량</th><th colspan="3">미임대</th></tr><tr><th>계</th><th>6개월 미만</th><th>6개월 이상</th><th>계</th><th>6개월 미만</th><th>6개월 이상</th></tr><tr><td>영구임대</td><td>162,450</td><td>7,798 (4.8)</td><td>6,530 (4.0)</td><td>1,268 (0.8)</td><td>165,724</td><td>10,943 (6.6)</td><td>9,050 (5.5)</td><td>1,893 (1.1)</td></tr><tr><td>국민임대</td><td>553,825</td><td>25,482 (4.6)</td><td>15,029 (2.7)</td><td>10,453 (1.9)</td><td>562,859</td><td>28,637 (5.1)</td><td>15,651 (2.8)</td><td>12,986 (2.3)</td></tr><tr><td>행복주택</td><td>106,710</td><td>15,557 (14.6)</td><td>9,450 (8.9)</td><td>6,107 (5.7)</td><td>129,047</td><td>17,348 (13.5)</td><td>8,741 (6.8)</td><td>8,607 (6.7)</td></tr><tr><td>공공임대</td><td>124,970</td><td>3,449 (2.7)</td><td>1,665 (1.3)</td><td>1,784 (1.4)</td><td>122,020</td><td>4,245 (3.5)</td><td>2,055 (1.7)</td><td>2,190 (1.8)</td></tr><tr><td>다가구 매입임대</td><td>162,469</td><td>10,328 (6.3)</td><td>5,741 (3.5)</td><td>4,587 (2.8)</td><td>171,516</td><td>7,660 (4.4)</td><td>2,658 (1.5)</td><td>5,002 (2.9)</td></tr></table>									유형	2022년 말 기준				2023년 말 기준				재고량	미임대			재고량	미임대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영구임대	162,450	7,798 (4.8)	6,530 (4.0)	1,268 (0.8)	165,724	10,943 (6.6)	9,050 (5.5)	1,893 (1.1)	국민임대	553,825	25,482 (4.6)	15,029 (2.7)	10,453 (1.9)	562,859	28,637 (5.1)	15,651 (2.8)	12,986 (2.3)	행복주택	106,710	15,557 (14.6)	9,450 (8.9)	6,107 (5.7)	129,047	17,348 (13.5)	8,741 (6.8)	8,607 (6.7)	공공임대	124,970	3,449 (2.7)	1,665 (1.3)	1,784 (1.4)	122,020	4,245 (3.5)	2,055 (1.7)	2,190 (1.8)	다가구 매입임대	162,469	10,328 (6.3)	5,741 (3.5)	4,587 (2.8)	171,516	7,660 (4.4)	2,658 (1.5)	5,002 (2.9)
			유형	2022년 말 기준				2023년 말 기준																																																																							
				재고량	미임대			재고량	미임대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영구임대	162,450	7,798 (4.8)	6,530 (4.0)	1,268 (0.8)	165,724	10,943 (6.6)	9,050 (5.5)	1,893 (1.1)																																																																							
국민임대	553,825	25,482 (4.6)	15,029 (2.7)	10,453 (1.9)	562,859	28,637 (5.1)	15,651 (2.8)	12,986 (2.3)																																																																							
행복주택	106,710	15,557 (14.6)	9,450 (8.9)	6,107 (5.7)	129,047	17,348 (13.5)	8,741 (6.8)	8,607 (6.7)																																																																							
공공임대	124,970	3,449 (2.7)	1,665 (1.3)	1,784 (1.4)	122,020	4,245 (3.5)	2,055 (1.7)	2,190 (1.8)																																																																							
다가구 매입임대	162,469	10,328 (6.3)	5,741 (3.5)	4,587 (2.8)	171,516	7,660 (4.4)	2,658 (1.5)	5,002 (2.9)																																																																							
주: 1. 괄호 안은 재고량 대비 비율 2. 통합임대는 2022년 재고량이 없어 제외하였으며,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고와 미임대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임대 해소방안으로 ①소득·자산·무주택요건 등 입주자격 완화, ②청년·신혼부부·다가구 대상 리모델링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율 상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임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공공임대(융자)(1333-4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액함 - 당초 계획액은 1,179억 5,8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335억 6,900만원을 증액한 2,515억 2,700만원으로 변경한 후 계획안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던 공공리츠사업에 1,688억 8,000만원 집행 ○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당초 국회 확정예산에 비해 큰 규모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한 것은 국회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23년 공공임대(융자)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호)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계 획 액</th> <th rowspan="2">집 행 액</th> <th rowspan="2">예산상 목표(호)</th> <th rowspan="2">실적(호)</th> </tr> <tr> <th>당초</th> <th>수정</th> </tr> <tr> <td>신규</td> <td>57,037</td> <td rowspan="5">-</td> <td>17,370</td> <td>2,555</td> <td>14,035</td> </tr> <tr> <td>2년차</td> <td>30,793</td> <td>21,713</td> <td>1,858</td> <td>965</td> </tr> <tr> <td>착공</td> <td>12,918</td> <td>35,967</td> <td>613</td> <td>965</td> </tr> <tr> <td>준공</td> <td>17,210</td> <td>2,648</td> <td>1,043</td> <td>939</td> </tr> <tr> <td>공공리츠</td> <td>-</td> <td>168,880</td> <td>-</td> <td>22,574</td> </tr> <tr> <td>합계</td> <td>117,958</td> <td>251,527</td> <td>246,578</td> <td>6,069</td> <td>39,478</td> </tr> </table> 주: 1) 신규 승인물량에는 공공임대(5/10년), 선택형, 장기전세 관련 물량 포함 2) 동 사업의 비목은 ‘기타민간융자금’ 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현액 수정시 공정별 내역(신규, 착·준공)이 아닌 총 금액으로 수정 운영 중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계 획 액		집 행 액	예산상 목표(호)	실적(호)	당초	수정	신규	57,037	-	17,370	2,555	14,035	2년차	30,793	21,713	1,858	965	착공	12,918	35,967	613	965	준공	17,210	2,648	1,043	939	공공리츠	-	168,880	-	22,574	합계	117,958	251,527	246,578	6,069	39,478
		구분	계 획 액		집 행 액	예산상 목표(호)				실적(호)																																						
당초	수정																																															
신규	57,037	-	17,370	2,555	14,035																																											
2년차	30,793		21,713	1,858	965																																											
착공	12,918		35,967	613	965																																											
준공	17,210		2,648	1,043	939																																											
공공리츠	-		168,880	-	22,574																																											
합계	117,958	251,527	246,578	6,069	39,478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공공리츠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로 집행한바, 향후 동일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다가구매입임대 매입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다가구매입임대의 매입 실적이 10,673호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함 【 최근 5년간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 대비 실적 】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계획</th> <th colspan="3">실적</th> </tr> <tr> <th>전체</th> <th>LH</th> <th>지자체</th> </tr> <tr> <td>2019</td> <td>25,540호</td> <td>29,302호</td> <td>20,344호</td> <td>8,958호</td> </tr> <tr> <td>2020</td> <td>27,830호</td> <td>28,626호</td> <td>16,562호</td> <td>12,064호</td> </tr> <tr> <td>2021</td> <td>54,000호</td> <td>34,778호</td> <td>24,162호</td> <td>10,616호</td> </tr> <tr> <td>2022</td> <td>48,000호</td> <td>19,453호</td> <td>14,054호</td> <td>5,399호</td> </tr> <tr> <td>2023</td> <td>35,000호</td> <td>10,673호</td> <td>5,563호</td> <td>5,110호</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실적 급감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4월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하여 매입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사업 착수절차가 지연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로부터 1년이 안 된 시점인 2024년 2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변경함						구분	계획	실적			전체	LH	지자체	2019	25,540호	29,302호	20,344호	8,958호	2020	27,830호	28,626호	16,562호	12,064호	2021	54,000호	34,778호	24,162호	10,616호	2022	48,000호	19,453호	14,054호	5,399호	2023	35,000호	10,673호	5,563호	5,110호
		구분	계획	실적																																					
전체	LH			지자체																																					
2019	25,540호	29,302호	20,344호	8,958호																																					
2020	27,830호	28,626호	16,562호	12,064호																																					
2021	54,000호	34,778호	24,162호	10,616호																																					
2022	48,000호	19,453호	14,054호	5,399호																																					
2023	35,000호	10,673호	5,563호	5,110호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매입가 산정기준 현실화 등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매입 실적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보증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임대)할 수 있음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023년은 전무한 상황이며, 2024년 7월말 기준으로는 23호에 불과함 - 2024년 7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2만 217명이고,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는 1만 6,677명임 【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임대 실적 】 (단위 : 건) <table><tr><th>구분</th><th>‘23.6~12월</th><th>‘24.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합계</th></tr><tr><td>사전협의 신청</td><td>227</td><td>60</td><td>69</td><td>116</td><td>125</td><td>145</td><td>146</td><td>22</td><td>597</td></tr><tr><td>매입신청</td><td>18</td><td>8</td><td>13</td><td>7</td><td>14</td><td>11</td><td>20</td><td>23</td><td>114</td></tr><tr><td>매입 완료</td><td>-</td><td>1</td><td>-</td><td>-</td><td>-</td><td>2</td><td>3</td><td>17*</td><td>23</td></tr></table> 주: 2024년 7월에 매입완료한 17건은 다가구주택 매입 시 피해주택 외에 수반하여 취득한 주택 2호를 포함한 수치임(다가구주택 매입 총 6호) ※자료: 국토교통부 ○ 국회는 2024년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신탁사기피해주택·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매입임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음										구분	‘23.6~12월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사전협의 신청	227	60	69	116	125	145	146	22	597	매입신청	18	8	13	7	14	11	20	23	114	매입 완료	-	1	-	-	-	2	3	17*	23	
		구분	‘23.6~12월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사전협의 신청	227	60	69	116	125	145	146	22			597																																								
매입신청	18	8	13	7	14	11	20	23	114																																												
매입 완료	-	1	-	-	-	2	3	17*	23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절차 완화 및 실효성 있는 매입 수단 모색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8	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 관련 지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은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지원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 후 남은 보상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LH는 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도 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지침 위반 및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음 - LH는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281호를 매각하였으며, 그 매입금액은 152억 8,000만원, 매각금액은 305억 4,000만원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매각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69	신축매입주택 미입대를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4,610호 중 신축예정주택이 4,439호로 96%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다가구매입임대 LH 매입 현황 】 (단위: 호)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전체(A=B+C)</td><td>20,344</td><td>16,562</td><td>24,162</td><td>14,054</td><td>4,610</td></tr><tr><td>신축매입약정(B)</td><td>-</td><td>-</td><td>16,254</td><td>11,830</td><td>4,439</td></tr><tr><td>기존주택매입(C)</td><td>20,344</td><td>16,562</td><td>7,908</td><td>2,224</td><td>171</td></tr><tr><td>신축매입약정 비율(B/A)</td><td>0%</td><td>0%</td><td>67%</td><td>84%</td><td>96%</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2023년 기준 신축매입약정주택의 재고량 9,212호 중 16.4%에 해당하는 1,509호가 미입대 상태라는 점에서 신축주택이 기존주택에 비해 반드시 선호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A=B+C)	20,344	16,562	24,162	14,054	4,610	신축매입약정(B)	-	-	16,254	11,830	4,439	기존주택매입(C)	20,344	16,562	7,908	2,224	171	신축매입약정 비율(B/A)	0%	0%	67%	84%	96%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A=B+C)	20,344	16,562	24,162	14,054	4,610																														
신축매입약정(B)	-	-	16,254	11,830	4,439																														
기존주택매입(C)	20,344	16,562	7,908	2,224	171																														
신축매입약정 비율(B/A)	0%	0%	67%	84%	96%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 신축예정주택 적정 비율에 대해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통합공공임대 기준사업비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준사업비’를 기준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36%를 출자, 38% 융자하고, 사업시행자가 14%, 입주자가 12%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사업비는 2023년 전년 대비 7% 상승하였으며, 매년 전년 대비 5~7% 수준 상승함 ○ 실제 사업비의 평균값인 ‘계획사업비’의 경우 기준사업비에 비해 인상률이 커 LH 등 사업시행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 LH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 품질 저하가 우려됨 - 계획사업비는 2023년 전년 대비 27.7% 상승하여, 실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정부지원비율은 기준사업비 기준 74%(출자 36% + 융자 38%) 대비 27%p 낮은 47%에 불과함 ○ 2023년의 경우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의 격차로 LH가 호당 약 1억 1,117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총 2조 6,429억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였음 - 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부담한 금액은 최근 4년 누적 3조 6,974억원임 【 최근 5년간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현황 】 <table> <tr> <th colspan="2">구분</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누적</th> </tr> <tr> <td rowspan="3">호당 사업비 (천원)</td> <td>기준</td> <td>152,957</td> <td>160,600</td> <td>151,759</td> <td>191,004</td> <td>-</td> </tr> <tr> <td>계 획</td> <td>240,970</td> <td>284,163</td> <td>236,311</td> <td>302,181</td> <td>-</td> </tr> <tr> <td>격 차</td> <td>△88,013</td> <td>△123,563</td> <td>△84,552</td> <td>△111,177</td> <td>-</td> </tr> <tr> <td colspan="2">승인호수(호)</td> <td>1,181</td> <td>4,098</td> <td>5,254</td> <td>23,772</td> <td>34,305</td> </tr> <tr> <td colspan="2">추가부담(억원)</td> <td>1,039</td> <td>5,064</td> <td>4,442</td> <td>26,429</td> <td>36,974</td> </tr> </table> 주: 계획사업비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구의 사업비 평균값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구분		2020	2021	2022	2023	누적	호당 사업비 (천원)	기준	152,957	160,600	151,759	191,004	-	계 획	240,970	284,163	236,311	302,181	-	격 차	△88,013	△123,563	△84,552	△111,177	-	승인호수(호)		1,181	4,098	5,254	23,772	34,305	추가부담(억원)		1,039	5,064	4,442	26,429	36,974
		구분		2020	2021	2022	2023			누적																																							
호당 사업비 (천원)	기준	152,957	160,600	151,759	191,004	-																																											
	계 획	240,970	284,163	236,311	302,181	-																																											
	격 차	△88,013	△123,563	△84,552	△111,177	-																																											
승인호수(호)		1,181	4,098	5,254	23,772	34,305																																											
추가부담(억원)		1,039	5,064	4,442	26,429	36,974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 기준사업비를 실제 소요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1	국고보조금지침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국민임대출자(1440-404), 영구임대출자(1440-407), 행복주택출자(1440-408),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아울러, 연말인 12월 5일이나 12월 27일에 보조금을 전액 일괄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집행 가능성이 없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도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이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교부·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2	다가구매입임대 실집행을 고려한 출자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다가구매입임대 출자는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와 달리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왜곡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출자와 용자는 주택유형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동시에 지원되는데, 용자는 매입 실적 저조로 집행률이 52.6%인 반면, 출자는 집행률이 87%로 큰 차이가 나타남 - LH에 일괄 교부된 출자금 2조 1,046억 4,000만원 중 1조 6,416억 700만원이 유보됨 【 2023회계연도 다가구매입임대(용·출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계 획 액</th><th rowspan="2">이·전용 등(B)</th><th rowspan="2">계 획 현 액 (C)</th><th rowspan="2">집 행 액 (D)</th><th rowspan="2">이·전용 비율(B/A)</th><th rowspan="2">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 (D/A)</th></tr><tr><th>당초(A)</th><th>수정</th></tr><tr><td>다가구 매입임대 (용자)</td><td>3,237,000</td><td>1,533,120</td><td>△1,703,880</td><td>1,533,120</td><td>1,461,701</td><td>△52.6</td><td>45.2</td></tr><tr><td>다가구 매입임대 (출자)</td><td>2,839,300</td><td>2,698,784</td><td>△140,516</td><td>2,698,784</td><td>2,471,225</td><td>△4.9</td><td>87.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5년간 다가구매입임대 LH출자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출자금(A)</td><td>1,518,051</td><td>1,246,349</td><td>2,465,195</td><td>2,302,124</td><td>2,104,640</td></tr><tr><td>집행액(B)</td><td>1,350,606</td><td>1,246,349</td><td>1,562,161</td><td>919,000</td><td>463,033</td></tr><tr><td>유보금(C=A-B)</td><td>167,445</td><td>-</td><td>903,034</td><td>1,383,124</td><td>1,641,607</td></tr><tr><td>출자시기</td><td>19.03, 19.08, 19.09, 19.12</td><td>20.02, 20.06, 20.07, 20.09, 20.12</td><td>21.03, 21.05, 21.11</td><td>22.03</td><td>23.03</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사업명	계 획 액		이·전용 등(B)	계 획 현 액 (C)	집 행 액 (D)	이·전용 비율(B/A)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 (D/A)	당초(A)	수정	다가구 매입임대 (용자)	3,237,000	1,533,120	△1,703,880	1,533,120	1,461,701	△52.6	45.2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2,839,300	2,698,784	△140,516	2,698,784	2,471,225	△4.9	87.0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자금(A)	1,518,051	1,246,349	2,465,195	2,302,124	2,104,640	집행액(B)	1,350,606	1,246,349	1,562,161	919,000	463,033	유보금(C=A-B)	167,445	-	903,034	1,383,124	1,641,607	출자시기	19.03, 19.08, 19.09, 19.12	20.02, 20.06, 20.07, 20.09, 20.12	21.03, 21.05, 21.11	22.03	23.03
			사업명	계 획 액		이·전용 등(B)	계 획 현 액 (C)	집 행 액 (D)				이·전용 비율(B/A)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 (D/A)																																																					
당초(A)	수정																																																																	
다가구 매입임대 (용자)	3,237,000	1,533,120	△1,703,880	1,533,120	1,461,701	△52.6	45.2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2,839,300	2,698,784	△140,516	2,698,784	2,471,225	△4.9	87.0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자금(A)	1,518,051	1,246,349	2,465,195	2,302,124	2,104,640																																																													
집행액(B)	1,350,606	1,246,349	1,562,161	919,000	463,033																																																													
유보금(C=A-B)	167,445	-	903,034	1,383,124	1,641,607																																																													
출자시기	19.03, 19.08, 19.09, 19.12	20.02, 20.06, 20.07, 20.09, 20.12	21.03, 21.05, 21.11	22.03	23.03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하도록 사업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3	실집행을 고려한 출자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보증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1440-41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LH의 ‘단일세대및세대통합’ 내역사업과 ‘매입임대시설개선’ 내역사업의 2023년 실집행액이 0원임에도 LH에 대한 출자금 계획액 전부를 집행하였음 - 단일세대및세대통합 :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소형평형 두 채를 통합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은 1,326억원이고 전액 집행됨 - 매입임대 시설개선 : 매입임대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은 153억원이고 전액 집행됨 【 2020~2023년 LH출자금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3">LH</th> </tr> <tr> <th>출자금(A)</th> <th>실집행(B)</th> <th>잔여유보금(A-B)</th> </tr> <tr> <td rowspan="4">단일세대 및 세대통합</td> <td>2020</td> <td>5,950</td> <td>5,950</td> <td>0</td> </tr> <tr> <td>2021</td> <td>258,476</td> <td>137,595</td> <td>120,881</td> </tr> <tr> <td>2022</td> <td>369,919</td> <td>268,788</td> <td>101,131</td> </tr> <tr> <td>2023</td> <td>115,596</td> <td>0</td> <td>115,596</td> </tr> <tr> <td rowspan="4">매입임대 시설개선</td> <td>2020</td> <td>30,000</td> <td>30,000</td> <td>0</td> </tr> <tr> <td>2021</td> <td>35,500</td> <td>35,500</td> <td>0</td> </tr> <tr> <td>2022</td> <td>35,500</td> <td>26,751</td> <td>8,749</td> </tr> <tr> <td>2023</td> <td>11,800</td> <td>0</td> <td>11,800</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21년~2022년 과도한 물량이 편성되어 이월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계획액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물량만을 편성하거나, 집행 단계에서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구분	연도	LH			출자금(A)	실집행(B)	잔여유보금(A-B)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2020	5,950	5,950	0	2021	258,476	137,595	120,881	2022	369,919	268,788	101,131	2023	115,596	0	115,596	매입임대 시설개선	2020	30,000	30,000	0	2021	35,500	35,500	0	2022	35,500	26,751	8,749	2023	11,800	0	11,800
			구분	연도	LH																																												
					출자금(A)			실집행(B)	잔여유보금(A-B)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2020	5,950	5,950	0																																													
	2021	258,476	137,595	120,881																																													
	2022	369,919	268,788	101,131																																													
	2023	115,596	0	115,596																																													
매입임대 시설개선	2020	30,000	30,000	0																																													
	2021	35,500	35,500	0																																													
	2022	35,500	26,751	8,749																																													
	2023	11,800	0	11,800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편성하고 출자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장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2022. 6.)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임 - LH의 최근 5년('19년~'23년) 간 부채 규모, 이자부담부채(사채·주택도시기금 등) 규모, 이자부담부채 비율 및 장기보유재고자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5년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 (단위: 조원, %) <table> <tr> <th>구분</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r> <tr> <td>부채(A)</td> <td>127</td> <td>130</td> <td>139</td> <td>147</td> <td>153</td> </tr> <tr> <td>부채비율(부채/자본)</td> <td>254</td> <td>234</td> <td>221</td> <td>219</td> <td>218</td> </tr> <tr> <td>이자부담부채(B)</td> <td>65.9</td> <td>68.8</td> <td>75.2</td> <td>81.6</td> <td>88.3</td> </tr> <tr> <td>이자부담부채비율(B/A)</td> <td>51.9</td> <td>52.9</td> <td>54.1</td> <td>55.5</td> <td>57.7</td> </tr> <tr> <td>장기보유재고자산</td> <td>67</td> <td>69</td> <td>73</td> <td>78</td> <td>83</td> </tr> </table>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 - '23년 부채비율은 218%로서 '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14% 대비 4%p 증가하였음 - LH 재무상태표 내 미분양토지 중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토지의 비중이 54.9%를 차지 ※ 재고자산은 장기간 매각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 및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완공 후 미분양 제품은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LH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2년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6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양주 옥정, 창원 가포, 양산 사송 세 지구의 미분양 물량 합계는 1,153호에 달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채(A)	127	130	139	147	153	부채비율(부채/자본)	254	234	221	219	218	이자부담부채(B)	65.9	68.8	75.2	81.6	88.3	이자부담부채비율(B/A)	51.9	52.9	54.1	55.5	57.7	장기보유재고자산	67	69	73	78	8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채(A)	127	130	139	147	153																																					
부채비율(부채/자본)	254	234	221	219	218																																					
이자부담부채(B)	65.9	68.8	75.2	81.6	88.3																																					
이자부담부채비율(B/A)	51.9	52.9	54.1	55.5	57.7																																					
장기보유재고자산	67	69	73	78	83																																					
시정요구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장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보유재고자산(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 재고 해소를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7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탁사업자금 관리 부적절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탁사업자금을 이자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고 이로 인해 공적 자금의 운용 수익이 민간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LH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2023년 기준 총 167개의 사업을 수탁함 - LH는 수탁사업자금을 이자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연 0.1% 이율 수준)으로 예치하였는데, 고금리기조 등으로 은행권들의 실적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자금 운용 수익이 과하게 민간에 귀속된 면이 있음 - 한국환경공단 등 타 공공기관에서 수탁사업자금에 대해 보통예금 수준을 상회하는 이율의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효율 높은 관리방안 마련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21년 수탁사업자금 이자수익률은 0.5%였으나 2023년 3.04%로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수탁사업자금 이자수익률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한국토지주택공사</th> <th colspan="2">한국환경공단</th> </tr> <tr> <th>연도말 잔액</th> <th>이자수익률</th> <th>연도말 잔액</th> <th>이자수익률</th> </tr> <tr> <td>2021년</td> <td>442,276</td> <td>0.1%</td> <td>1,535,675</td> <td>0.50%</td> </tr> <tr> <td>2022년</td> <td>554,706</td> <td>0.1%</td> <td>1,341,289</td> <td>1.57%</td> </tr> <tr> <td>2023년</td> <td>579,894</td> <td>0.1%</td> <td>1,106,431</td> <td>3.04%</td> </tr> </table>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연도말 잔액	이자수익률	연도말 잔액	이자수익률	2021년	442,276	0.1%	1,535,675	0.50%	2022년	554,706	0.1%	1,341,289	1.57%	2023년	579,894	0.1%	1,106,431	3.04%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연도말 잔액	이자수익률		연도말 잔액	이자수익률																									
2021년	442,276	0.1%	1,535,675	0.50%																									
2022년	554,706	0.1%	1,341,289	1.57%																									
2023년	579,894	0.1%	1,106,431	3.04%																									
시정요구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탁사업자금을 이자수익률이 낮은 보통예금(연 0.1% 이율 수준)으로 예치하였고 이로 인해 공적 자금의 운용 수익이 민간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탁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 수준의 이자수익이 반환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매각 계획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자산효율화계획에 따른 정리대상 자산 중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의 99%를 차지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수립함 - LH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 7월)에 따라 자산효율화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7,778억원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고 계획함 - 2023년까지 자산효율화 계획률은 34.71%이나 실제 이행률은 4.13%로 집단에너지사업의 매각실적 저조가 주 원인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효율화계획 이행 실적 】 (단위: 억원, %)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2023년까지</th> <th rowspan="2">전체기간</th> <th colspan="2">~2023년까지</th> </tr> <tr> <th>계획 금액(A)</th> <th>이행실적(B)</th> <th>계획 금액(C)</th> <th>계획률(A/C)</th> <th>이행률(B/C)</th> </tr> <tr> <td>비핵심 부동산</td> <td>198</td> <td>177.2</td> <td>4,847</td> <td>4.09</td> <td>3.66</td> </tr> <tr> <td>불요불급한 여타 자산</td> <td>2,380</td> <td>1.28</td> <td>2,382</td> <td>99.92</td> <td>0.05</td> </tr> <tr> <td>집단에너지사업</td> <td>2,377</td> <td>0</td> <td>2,377</td> <td>100.0</td> <td>0</td> </tr> <tr> <td>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td> <td>122</td> <td>143.02</td> <td>549</td> <td>22.22</td> <td>26.05</td> </tr> <tr> <td>합계</td> <td>2,700</td> <td>321.5</td> <td>7,778</td> <td>34.71</td> <td>4.13</td> </tr> </table>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집단에너지사업은 누적 경상손실로 인해 반복 유찰되는 등 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 및 전기 에너지를 사업지구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			구분	~2023년까지		전체기간	~2023년까지		계획 금액(A)	이행실적(B)	계획 금액(C)	계획률(A/C)	이행률(B/C)	비핵심 부동산	198	177.2	4,847	4.09	3.66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2,380	1.28	2,382	99.92	0.05	집단에너지사업	2,377	0	2,377	100.0	0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122	143.02	549	22.22	26.05	합계	2,700	321.5	7,778	34.71	4.13
		구분	~2023년까지				전체기간	~2023년까지																																						
계획 금액(A)	이행실적(B)		계획 금액(C)	계획률(A/C)	이행률(B/C)																																									
비핵심 부동산	198	177.2	4,847	4.09	3.66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2,380	1.28	2,382	99.92	0.05																																									
집단에너지사업	2,377	0	2,377	100.0	0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122	143.02	549	22.22	26.05																																									
합계	2,700	321.5	7,778	34.71	4.13																																									
시정요구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의 누적이 심화되고 있고 매각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9	헬스케어타운 및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총괄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 중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부지에 총사업비 1조 5,966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총 2조 5,14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휴양콘도와 쇼펍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임 ○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간 개발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손해배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1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나 2017년 6월 녹지그룹이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 -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15년 3월 토지수용 관련 소송패소 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손해배상으로 약 1,6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24년 4월 현재 JDC는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보상액이 약 7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 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가.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한국철도공사 인건비 부족문제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출연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운용됨.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는 인건비, 경비, 보수비로 구분되며, 2021년~2023년 집행내역을 보면 보수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 등의 부족액은 2021년 400억원, 2022년 672억원, 2023년 7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함. -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강화 정책으로 2017~2022년 동안 1,258명 증원이 있었는데, 정부지원 인건비는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아 인건비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임. ○ 현재 2023년 부족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 중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검사(3634-35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항공기검사 사업은 항공사 등 민원소요자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각종 증명·승인,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 정비조직 인증 등을 위한 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수행하는 감독관 등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임 ○ 2021년까지는 일반수용비(210-01) 비목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공통경비 감액('21.8.23)에 맞춰 공통경비 감액분만큼 일반수용비로 배정하되 불용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일반수용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②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③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목에 해당하는바, 이는 해당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고, 일반수용비가 신규편성된 2022년 이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국내여비로 5백만원 전용(감)하여 집행한 내역 외에는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였음. * 2022년 2,400만원, 2023년 1,900만원 불용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항공기검사 사업에 일반수용비를 편성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전용하거나 전액 불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안전한 관사 계약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 · 관사 관리(37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청 · 관사 관리 사업은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 사무실 및 지방공항 관사 임차료, 청사시설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고, 청사 및 관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 ○ 청 · 관사 관리 사업의 무형자산 비목은 관사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지난 2019년 항공교통본부 직원의 관사 용도로 다가구주택을 전세금 6,00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2023년 6월 주택소유자의 채무 미이행에 따른 채권자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 및 배당 결과 전세금 6,000만원 중 4,000만원은 미회수되었음. ○ 지난 5년간 항공교통본부의 전세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선순위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관사의 경우 근저당권, 소액임차인 보증금 등을 합하면 해당 건물의 거래가액을 넘는 경우도 존재하며, 특히 주택소유자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아직 전세금이 회수되지 못한 건의 경우에는 감정가액(11억 3,600만원)이 계약 당시 거래가액(12억 2,400만원)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매에 따른 낙찰액(8억 7,800만원)이 거래가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사들도 자칫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고의 손실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관사를 계약함에 있어 안전한 관사를 계약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의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물류산업지원(4034-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물류산업지원 사업은 물류 효율화 기반 조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 등 물류산업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문 물류시장 확대, 물류산업 선진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은 '14년도부터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지난 3년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택배군에서 일부 기업들이 계속 특정 등급(B, C++, C+)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반면 대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들이 특정 등급대(A+, A, B++, B)를 계속 받는 결과가 나타나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라는 사업의 당초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서비스평가 대상을 일반택배군과 기업택배군으로 구분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로 볼 수 있어 평가 대상군의 대기업군, 중견기업군 또는 중소기업군으로 구분 등을 통한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매년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별 평가결과의 택배업계와의 공유를 통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부처에서 관련 추진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연도별 평가 결과 공유회 1회 개최가 전부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택배산업서비스 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택배 서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 평준화를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결과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높은 초기 시설투자비용으로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연말까지 27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였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2024년에도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역시 예산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자인 제주도의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6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 27억 4,000만원 전액을 제주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절차를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상정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등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여 실집행액은 400만원(0.1%)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제주 물류센터 조성에서와 같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천안 공동물류센터의 조속한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천안 공동물류센터는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시기인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진 2023년 12월 29일 준공되었음. 천안 공동물류센터는 '24.3월까지 공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위해 1차 공고(4.9.~5.20.) 및 2차 공고(7.24.~8.8.)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3차 공고(8.14.~21.)를 거쳐 위탁운영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입주업체 선정, 운영설비 투입 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2024년 10월 중에야 가능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천안 공동물류센터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중견·중소기업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이차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4034-31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기존 물류센터의 개선·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장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한 효율성·안전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에 대한 대출 투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스마트물류센터 효과분석 사례조사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분류 자동화 등으로 직·간접 인건비 및 직송 활성화를 통한 연계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분류자동화로 1일 1.6억원, 직송 활성화로 1일 177억원 절감효과, 적재량 증가로 충분한 안전재고 확보 등 ○ 다만, 실제 동 사업에 의해 이차지원이 이루어진 스마트물류센터 소유 기업의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물류센터가 매년 증가하고, 선정된 물류센터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차지원금 가운데 대기업 소유 물류센터에 지원되는 지원금 총액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자금 등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1년 4개소(총 6개소), '22년 11개소(총 18개소), '23년 14개소(총 23개소) ** '21년 약 62%, '22년 약 70%, '23년 약 62%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이차지원이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포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대상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및 민간의 수요, 시장 상황,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소물류시스템 구축(4034-31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소화물차 공급 및 확산에 대비하여 대형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임. ○ 2023년 총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차례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9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대형 수소화물차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일반 수소충전소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형화물차용 수소충전소 2개소(인천, 울산)의 경우 수소화물차보다는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월평균 74회, 매출액은 월평균 260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요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대형 수소화물차의 운행대수 등 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 지자체·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의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4158-3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957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정보통신기술-도로교통 융합신기술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자율주행 신뢰도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연구개발 사업임. ○ 2023년 동 사업 과제들의 정부출연금 실집행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과제들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총 44억 4,216만원의 잔금 및 이월금이 발생하였음 ○ 또한 동 사업의 정산결과, 13개 과제에 대하여 약 1억 1,700만원의 사업비 불인정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불, 목적 외 식대 사용, 연구수당 초과지급 등 연구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집행 가능성과 연구개발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제3교통안전체험 센터 구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사업은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및 안전운전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등 체험교육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건립 진행이 필요함. -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3년 건립공사 예산 26억원이 전액 불용된바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개소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체험교육 수요가 누적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첨단자동차검사 연구센터 장비 구입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4633-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동 자동차들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 국토교통부는 VR/AR 기반의 관능(육안) 검사를 위한 3종의 콘텐츠장비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확정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계획대로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자동차안전·하 자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동차안전도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동차교환불제도운영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중재부의 중재심리 및 판정서 작성수당, 하자 사실조사 비용, 자동차제작 결함 심의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일부 위원들의 경우 연간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2회만 참석하는 등 참석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주요 업무인 중재사건의 경우 2023년 연간 중재사건 139건 중 1건도 담당하지 않은 중재 위원이 전체 중재위원 60명 중 12명, 1~2건에 불과한 위원도 16명으로 활동 실적 또한 미흡했음. ○ 또한 최근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참석률 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위원 선임 등 운영상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소비자 권익 구제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4년 4월말까지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접수 2,720건 중 2,518건이 종료되었으며, 사건종료 건수 중 932건(37.0%)이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되어 중재사건 종료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요건미충족 등 각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중재진행을 위해 연락하더라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각하된 건이 932건 중 851건(91.3%)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에 관하여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면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장비 구입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장비구축(4634-327)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 장비구축 사업은 국내 수소자동차 활성화와 수소자동차 충돌사고 및 화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시험평가 센터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상환경 재현 수소 연료시스템 모니터링 평가장비 1종을 구입하였는데, 2023년 12월 구입계약을 완료하여 2024년 10월에 설치될 예정임. ○ 그러나 정작 장비가 설치될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는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되지 않은 센터의 장비를 선제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장비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공단출연(4638-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요건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로서 만 65~70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중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혈압·신체기능 적합도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료적성검사 대체제도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로 도입 당시 택시 및 화물차 업계의 반발로 도입 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부실검사, 낮은 검사기준, 반복 재검사 등으로 인해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2020~2023년 평균 2.5% 수준이나 의료적성검사는 0.2%에 불과하여 고령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련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부실검사 예방, 적성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추진실적이 미흡한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4638-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전국에 분산된 주차장 공간정보를 국가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교통혼잡·주차난 해결 및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의 주차장 개소는 전국 주차장 1,891,458개소(2022년 기준) 중 168,949개소(8.93%)이며,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주차장은 1,037개소(0.05%)임. *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2개 지자체와 연계 완료, 2024년 14개 추가하여 총 96개 지자체 연계 - 또한, 동 사업은 2021년 이후 예산이 1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2023년에도 예산 집행율이 81.9% 수준으로 높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2020년 294백만원, 2021년 2,680백만원, 2022·2023년 193백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사업 지속추진 여부 재검토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민영 주차장 연계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 ○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차장 정보의 통합관리 활용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2025년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한바, 진행 상황에 대한 관찰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교통시설특별회계 대규모 불용 및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됨 (국토부 : 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 해수부 : 항만계정) ○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2023년에 4조 4,982억원이 불용되어 전년대비 3조 9,696억원(750.1%)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예산현액은 2023년이 가장 적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2.3%로 크게 증가함.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 2019년 1.8%, 2020년 0.5%, 2021년 1.0%, 2022년 1.3% - 이 중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불용규모가 1조 2,885억원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불용액 약 1.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집행자금 부족으로 예산규모가 크고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SOC 분야의 집행을 다음연도로 늦춘 것으로 보임. - 교통시설건설분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증가(116.88→156.51)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건설공사비지수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특정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자재비, 인건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는 지수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3년 세수 부족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3조원 규모의 불용액 발생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대규모 국책 사업의 목적 달성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위 시정요구 미이행 관련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고속도로조사설계(1531-301)	시정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 고속도로의 계획·설계 관련 비용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27억 2,600만원이 전액 불용됨. ○ 2022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의결로 국토부 내부감사, 관계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비심사보고서 의결(2023.9.1.)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부감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관계공무원 징계도 완료되지 못함. - 노선 확정 후 전략영향평가도 진행해야 하는데 국토위 요구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2022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시정요구(시정요구 유형 : 징계) 국토교통부는 용역사의 타당성조사 월간 진도보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100% 준공 안 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담당자를 징계할 것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책임자를 징계할 것(시정) ○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불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도로건설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고속도로건설(1532) 단위사업, 일반국도건설(1632) 단위사업,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36) 단위사업							시정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고속도로·일반국도·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규모가 총 3,957억원 수준임. -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2023년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table>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예산액</th> <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B)</th> <th rowspan="2">이·전용 등(C)</th> <th rowspan="2">예산현액 (A+B+C)</th> <th rowspan="2">집행액</th> <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 <th rowspan="2">불용액</th> </tr> <tr> <th>본예산</th> <th>추경(A)</th> </tr> <tr> <td>고속도로건설</td> <td>1,638,846</td> <td>1,638,846</td> <td>-</td> <td>-</td> <td>1,638,846</td> <td>1,402,940</td> <td>-</td> <td>235,906</td> </tr> <tr> <td>일반국도건설</td> <td>1,478,673</td> <td>1,478,673</td> <td>193,085</td> <td>△80,828</td> <td>1,590,930</td> <td>1,323,097</td> <td>135,402</td> <td>132,431</td> </tr> <tr> <td>대체우회도로건설</td> <td>335,339</td> <td>335,339</td> <td>43,069</td> <td>35,559</td> <td>413,967</td> <td>350,000</td> <td>36,573</td> <td>27,395</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세 건설사업의 이·전용규모를 보면 고속국도가 1조 850억원, 일반국도가 6,071억원,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 811억원인데 국회 확정예산 대비 66.2%, 41.1%, 24.2% 비율임. -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이 관행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일반국도건설사업의 경우 17개 사업에서 본예산의 70% 이상이 전용·조정된 바 있음.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건설	1,638,846	1,638,846	-	-	1,638,846	1,402,940	-	235,906	일반국도건설	1,478,673	1,478,673	193,085	△80,828	1,590,930	1,323,097	135,402	132,431	대체우회도로건설	335,339	335,339	43,069	35,559	413,967	350,000	36,573	27,395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속도로건설	1,638,846	1,638,846	-	-	1,638,846	1,402,940	-	235,906																																									
일반국도건설	1,478,673	1,478,673	193,085	△80,828	1,590,930	1,323,097	135,402	132,431																																									
대체우회도로건설	335,339	335,339	43,069	35,559	413,967	350,000	36,573	27,395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사업 지연 시 총사업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 ○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사업에서 본예산에 상당하는 예산의 전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고속도로건설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고속도로건설(1532) 단위사업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고속도로건설 단위사업은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338억원이며 이 중 1조 4,029억원을 집행하고 2,359억원을 불용함. ○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안산-인천고속도로(30억원), 문산-도라산고속도로(524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의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타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불용됨. - 그밖에 세종-청주고속도로(1,007억원), 울산외곽고속도로(573억원)도 전액 불용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노선의 경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2023년 6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게 되며 2023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731-46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은 사고 빈발지역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등에 필요한 단년도 경상비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임. - 총액계상사업이란 예산을 세부 내역별로 편성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세부내역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도록 규정함. ○ 동 사업을 통해 ‘천사대교* 스마트관리사무소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다년도 사업이며, 해상교량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량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어려움. ※ 전남 신안군 암태면~압해읍을 연결하는 교량(연장 7,224m, 왕복 2차로)으로 사장교 + 현수교가 복합된 케이 블 교량(2019.4월 개통)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다년도 사업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에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과적단속장비 문제 관련 정확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과적단속운영(1732-303)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과적단속운영 사업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 인건비,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임. ○ 언론보도*를 통해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장비의 측정 오차율이 58%가 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센서오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남. ※ KBS 뉴스(2024.4.4.) 등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국 검문소 15곳 가운데 11곳에서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154억원을 들여 센서장비를 교체하는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적단속장비를 도입한 경위를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과적단속운영(1732-303)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과적단속운영 사업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 인건비,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임. ○ 과적단속운영 사업 운영비 예산 중 일부를 국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집행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함. - 일반수용비 예산 243만원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지출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과적단속 운행제한 부실조치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과적단속운영(1732-303)	시정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과적단속 및 후속조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지방국토관리청(일반국도), 민자사업자(민자고속국도)자에게 위임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 감사원 감사(2023년 6월~7월) 결과 과적 해소가 가능한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명령은 0.4%에 불과하고 나머지 99.6%는 도로운행이 가능한 회차, 통과로 과적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과적차량 분리운송을 위해서는 분리운송 공간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분리 운송 공간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한 280개 단속검문소에 대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하지 않음. - 그 결과 과적단속 차량이 회차, 통과 명령을 통해 도로를 운행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적극 실시하는 등 단순 회차·통과 조치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시정) ○ 국토교통부는 단속검문소를 전수조사하고 분리운송 공간 마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26	지자체 ITS 구축 예산의 적정한 편성·배정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 첨단도로교통체계(1736-304)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추진을 위해 국도 ITS 구축 운영 및 지자체 ITS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함. ○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2023회계연도 1,020억원에서 2024년도 54억원으로 대폭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 ○ 지자체 실행률(74.6%), 성과지표(ITS 구축연장), 지방도 ITS 구축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보조금 예산의 증액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ITS 구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통편의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2631)																	
		지적사항	○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으로 출연금의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일반철도건설 사업 2023년도 결산 】 (단위: %, 백만원) <table> <tr> <th>2023년 교부액</th> <th>2022년 이월액</th> <th>교부현액</th> <th>집행액</th> <th>이월액</th> <th>집행률</th> </tr> <tr> <td>1,700,904</td> <td>1,983,903</td> <td>3,684,807</td> <td>1,858,219</td> <td>1,821,182</td> <td>50.4</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이 과다하게 유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시정), 일반철도사업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 바 있음(제도개선).						2023년 교부액	2022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1,700,904	1,983,903	3,684,807	1,858,219	1,821,182	50.4
		2023년 교부액	2022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1,700,904	1,983,903	3,684,807	1,858,219	1,821,182	50.4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등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연계 구간 개통지연 관련 민자철도 손실보상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수도권광역급행철도(2833-310)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운영사업에서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의 운영사인 (주)신분당선에게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차료 목 191억원을 배상금 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함. - 이는 연계노선인 성남~여주, 정자~광교 노선의 개통지연에 따른 것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경우 운정~삼성(민자), 삼성역(서울시), 삼성~동탄(재정)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삼성역 구간의 개통지연으로 인한 민자사업자의 순운영이익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상황임. ※ 구체적 규모는 운정~삼성 구간 개통 후 실제 운영이익이 측정되어야 산정 가능 ○ 두 사례는 하나의 노선이 여러 구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의 개통지연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게 되는 공통된 구조를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손실보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계구간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에 대한 사전 연구·설계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관련 소송배상금 지출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철도운영지원사업 중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비용(비용보전금액)을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3,637억 9,800만원 및 자체전용 526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159억 4,000만원을 집행함. ○ 2015년부터 재정부담 절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방식을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부의 비용보전금액이 2022년 4,415억원, 2023년 4,159억원으로 많은 정부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공항철도 측의 교통센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공항철도의 기타운영비로 인정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상승하고 비용보전금액이 증가한 문제가 있음. - 운영수입과 운영비용 간 차이를 보전하는 구조인데, 인천공항 교통센터 소송판결액 282억, 4,2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였는데, (주)공항철도 측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 것은 부적절함. ○ 한편, 인천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은 11,000원으로 협약상 요금인 17,8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해외 공항철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 열차 운임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점은 문제가 있음. - 동일거리(63km) 환산 기준 원화로 일본 22,300원, 영국 47,000원, 캐나다 34,000원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교통센터 소송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등 정부 지원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사업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 세부사업 분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철도운영지원사업에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3,638억원) 철도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3,779억원)이 포함됨. ○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전지출 성격의 비용보전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금액을 성격에 맞지 않는 임차료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므로 임차료 비목이 적절함. ○ 참고로 BTO 방식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의 사업자손실보전금액을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의 비목을 임대료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여객 공항시설 사용료 관리체계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항공항만수입(67-67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항공항만수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통해 구성됨. ○ 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사가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권 환불신청기한 내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 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지나쳐 항공사의 잠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제선 : 인천공항·김포공항 출발여객 17,000원, 기타공항 국제선 출발여객 12,000원, 모든 공항 환승여객 10,000원 / 국내선 : 인천공항 5,000원, 김포 및 기타 공항 4,000원 - 이는 20년 이상 지속된 문제로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는 경우 환급가능한 요금 문제는 외교부(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등 다부처에 걸쳐 있어 범부처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여객공항시설 사용료 관리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정책연구 방식으로 변경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공항개발조사(3532-309)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항개발조사 사업은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공항발전 지원 사업 내에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2억원)이 편성되었음. ○ 경기남부국제공항 용역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변경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남부국제공항 2023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합의 미흡 등을 사유로 불용하였고, 이후 2024년 예산에 다시 반영되었음. - 예산 반영 취지를 고려하고 지역갈등 해결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정책연구 방식으로 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정책연구 방식으로 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로 변경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 영토 관리 지원 등을 위해 흑산도에 소형공항(1,200m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일정 등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이 순연되고 있고, 80인승 항공기 취항 기준으로 공항등급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총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경우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만큼 총사업비 변동요인과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4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저비용항공사 성장, 내·외국인 관광객 증대 등으로 급증하는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연 1,992만명 수용가능한 규모의 신공항(3,200m 활주로,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 2023년 7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마쳤음에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설계 2년, 공사 5년이 소요될 예정인바, 2024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에 고시될 경우 2025년 기본설계, 2026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 후 2032년 상반기에야 준공·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주체들의 갈등 완화·조정 방안 마련 및 면밀한 사업 설계 등으로 연례적 예산 불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및 제주도민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2024년도 예산 172억 8,000만원 중 172억 2,000만원을 불용한바, 연례적인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 불용 상황이 반복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있음. * 제주도 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고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4차례 주민설명회 등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와 지자체 내 자체 검토기간 등을 거쳐 2023년 7월 지자체 의견을 접수한 바 있음. 【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추이 】 (단위: %) <table><tr><td>구분</td><td>'16.1.</td><td>'17.9.</td><td>'18.9.</td><td>'19.6.</td><td>'20.1</td><td>'21.2.</td><td>'21.9.</td><td>'22.2.</td><td>'22.5.</td><td>'22.10.</td><td>'23.1.</td><td>'23.5.</td><td>'24.2.</td><td>'24.3.</td></tr><tr><td>찬</td><td>68</td><td>63.7</td><td>51.7</td><td>48.6</td><td>47.3</td><td>44.1</td><td>43.8</td><td>45.2</td><td>45.9</td><td>44.9</td><td>46.2</td><td>46.4</td><td>45.7</td><td>43.1</td><td>48.0</td><td>46.1</td></tr><tr><td>반</td><td>21</td><td>24</td><td>41.8</td><td>47.1</td><td>48.5</td><td>47</td><td>51.1</td><td>49.1</td><td>49.6</td><td>48.8</td><td>46.6</td><td>50.8</td><td>48.8</td><td>49.2</td><td>47.0</td><td>47.7</td></tr></table> ▶ 주 찬성 요인 : 공항 주변지역(제주 동부) 발전, 건설 ·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등 ▶ 주 반대 요인 : 현 공항 주변 상권 침체 우려(제주 중부), 환경훼손 우려, 오버투어리즘 등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16.1.	'17.9.	'18.9.	'19.6.	'20.1	'21.2.	'21.9.	'22.2.	'22.5.	'22.10.	'23.1.	'23.5.	'24.2.	'24.3.	찬	68	63.7	51.7	48.6	47.3	44.1	43.8	45.2	45.9	44.9	46.2	46.4	45.7	43.1	48.0	46.1	반	21	24	41.8	47.1	48.5	47	51.1	49.1	49.6	48.8	46.6	50.8	48.8	49.2	47.0	47.7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관련 주체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 설계 등으로 연례적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구분	'16.1.	'17.9.	'18.9.	'19.6.	'20.1	'21.2.	'21.9.	'22.2.	'22.5.	'22.10.	'23.1.	'23.5.			'24.2.	'24.3.																																																												
찬	68	63.7	51.7	48.6	47.3	44.1	43.8	45.2	45.9	44.9	46.2	46.4	45.7	43.1	48.0	46.1																																																														
반	21	24	41.8	47.1	48.5	47	51.1	49.1	49.6	48.8	46.6	50.8	48.8	49.2	47.0	47.7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후속절차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새만금 신공항 건설(3538-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및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2028년 까지 총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하여 군산시 새만금 지역에 연장 2,500m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SOC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동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2023년 예산은 이로 인해 기본조사 설계비 중 57억 800만원을 이월하고 실시설계비 75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의 후속절차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냉방 및 방음시설 설치 지연 문제 해소방안 마련,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태점검 및 사업방향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공항소음대책(36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항소음대책 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국토교통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1~’25)’에 따르면, 냉방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까지 84%, 2030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상황(냉방시설 누적 설치율은 2023년말 기준 59%)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음시설 설치사업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방음시설 설치율은 60%대임.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통해 제2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제3차 계획이 고시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의 세부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항별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사업 방향 개편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유지보수 비용 예산의 불용 및 중복 편성 사례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3636-33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항공안전자료 분석에 따른 취약분야 선제적 발굴 및 집중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한 항공안전 감독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에는 하드웨어(서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로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의 서버 이관을 추진하였던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된 정보시스템은 관리원 자체 예산안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 - 이에 지난 2년 간 국토교통부의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내역사업 예산 1억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2년간 불용처리(2022년 8,600만원, 2023년 9,300만원)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예산의 불용 및 중복 편성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의 적극적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3637-32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①국내 드론 기업의 우수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과 드론 비즈니스모델을 실증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②지역별로 드론을 활용한 특화 분야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③국내 드론 제작·활용업체, 공공분야 드론 보유·활용현황 등 드론산업 동향 파악 및 통계분석을 통해 드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드론산업 실태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 동 사업에 따라 수립된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023~2032)’은 맞춤형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일정까지 설정한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23.下)’을 수립 하였으나, 현장실습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비롯한 6개 세부과제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극적 개선이 요구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과 관련하여 미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비롯한 세부 과제들의 차질없는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0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회계 관리 및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드론 인증센터 구축사업(3637-32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급증하는 드론 인증 수요에 대비하고 상업용 드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론 시스템 안전성 인증 인프라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건축공정 지연,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16억 8,000만원뿐만 아니라 전년도 이월 예산 21억 6,000만원을 전부 이월하는 등 재이월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3031 - 316),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3031-320), 양산도시철도건설(3031-322,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3031-326),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3031-333),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3031-335),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3031-353),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3031-355,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건설(3031-35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총 예산 4,560억 4,500만원 중 45.5%인 2,074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 1,847억원 전액이 불용 되었음. ○ 일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임에도 사업비 집행 단계 에서 연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과소 집행하였음. ○ 2022년 사업이 종료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다음 연도인 2023년 내에 보 조금 반납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 7월에야 반납을 완료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제고 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시철도 건설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공사비의 비현실성 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추진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방비 매칭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보조금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은 노후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자금을 교부함. - 위 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보조사업자인 서울시와 부산시에 각각 415억원, 181억원을 교부함. ○ 서울시 및 부산시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44.4%, 57.1%에 그쳤는데, 이는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이 실제사업기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 2023년도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사업 실적행 내역 】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사업시행 주체 (기관명)</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 현액 (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C/A)</th></tr><tr><th>예산 현액</th><th>집행액 (C)</th></tr><tr><td>서울시</td><td>41,586</td><td>-</td><td>41,586</td><td>18,706</td><td>41,586</td><td>18,706</td><td>22,880</td><td>-</td><td>44.4</td></tr><tr><td>부산시</td><td>18,125</td><td>-</td><td>18,125</td><td>10,342</td><td>18,125</td><td>10,342</td><td>7,783</td><td>-</td><td>57.1</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서울시는 2021년도 발주분(5·8호선 298칸)의 사업기간(5년)과 국비지원기간(3년)의 차이 및 2023년도 발주분(5호선 200칸)의 계약 지연으로 인해 229억원을 이월함. - 부산시는 2021년도 발주분(부산1호선 200칸)의 사업기간(4년)과 국비지원기간(3년)의 차이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78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함.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서울시	41,586	-	41,586	18,706	41,586	18,706	22,880	-	44.4	부산시	18,125	-	18,125	10,342	18,125	10,342	7,783	-	57.1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서울시	41,586	-	41,586	18,706	41,586	18,706	22,880	-	44.4																																			
부산시	18,125	-	18,125	10,342	18,125	10,342	7,783	-	57.1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의 보조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보조금이 과다지급되는 비효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택시산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택시산업지원(4931-31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택시 총량조사를 통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에 따라 자율감차를 신청한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 부담금을 재원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여 택시업계의 근본문제인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려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46억 8,300만원으로, 45억 6,100만원(97.4%)이 집행되었고, 지자체 택시감차 수요부족에 따른 교부잔액으로 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2회계연도 국회 예결위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사전점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주, 제주, 전북 등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곳이 발생하였고, 전국적 감차 규모도 감차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음. - 제5차 택시총량 조사에 의해 감차 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여전히 실제 택시감차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가 필요함. * 현재 제5차 총량제(2025~2029) 조사를 위한 지침 개정 추진 중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규모를 재산정하며, 택시 거래가를 정확히 책정해 현실적인 보상비 규모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노선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 대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4931-330)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노선버스 운전인원 확충을 위하여 군·경 운전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운전 자격 취득 지원 및 버스운전인력 양성교육자에 대한 견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군·경 운전자격 취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수혜인원 대비 버스회사 취업 인원은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버스업계 인력부족 상황은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등에 기인하므로, 근로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버스준공영제 확대 시행 및 제도보완(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 전담관리조직 신설 등)과 같은 현실적 여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5년간 추진하였으나 실제 노선버스 인력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노선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예측 및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4931-33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을 제공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는 당초 64만명의 수요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수는 약 109만명에 달해 부정확한 수요예측 결과를 보였음. ○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당초 회당 500~900원 적립에서 회당 700~1,100원 적립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이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이 실 소요 대비 과소편성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 특히, 내역변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2023년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는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4.1% ~ 24.9%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추진중인 K-패스 사업의 경우 이용자 증가 추세, 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도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모빌리티활성화 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대규모 이월 반복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모빌리티활성화지원(4931-350)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모빌리티 시대 대비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임. ○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 27억원은 사업 공모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지원내역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액 전액이 이월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 추진시 사업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등 지자체보조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895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895억 1,400만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불용액 500만원은 배분잔액) -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지자체별 실행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수의 지자체가 교부받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실행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함(실행행률 61.2%). -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별 교부금 배정시 저상버스 발주 및 실제 도입 현황을 근거로 적정예산을 교부해야 했음에도 모든 지자체에 2023년 편성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등과 유사한 지자체보조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별 실제 집행 소요를 감안하여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에도 사전에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8,73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 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40%에 불과함. 서울시가 70%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개별 광역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동 사업 지연으로 저상버스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은 휠체어 이용자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전국 17개 시도 평균 실집행률 61.2% * 저상버스 도입률(2023년도) : 서울시 71.7%(최고), 울산 14.6%(최저), 경남 32.9%, 충북 33.5%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목표 : 3차 2021년도 42%, 4차 2026년도 62%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률이 아직 저조하므로, 관계 기관 및 차량제작사 등과 협력하여 저상버스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 ○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도입지원(101억 200만원)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운영지원(237억 5,000만원)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2023년도 실행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98.9%, 82.6%),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달성률과 운영지원 실행행률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법정운행대수 달성률 : 시·도별 편차(세종시 122.7%, 부산 63.2%) 최대 59.5%p 수준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지역별 실행행률 : 서울·인천·세종 등은 100%이나, 전남(34.9%), 광주(60.5%), 울산(62%) 등 지역별 편차 존재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벽지노선지원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벽지노선지원(4539-6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벽지노선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벽지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예산집행률(%)’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액으로 측정하고 있음. - 이는 단순 투입지표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지표이며,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측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벽지노선 운행거리나 벽지노선 수 등 벽오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하고 벽오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S-BRT 노선 구축시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광역BRT구축(4541-38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S-BRT(Super BRT)는 기존 BRT의 서비스 수준을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국제기준 Gold 등급의 최고급형 BRT로,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도입이 발표되었고 2020년 1월에는 S-BRT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서인 ‘고급 간선급행버스 체계 표준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었음. ○ 현재 개통하여 운행 중인 창원 BRT 1단계 구간은 당초 S-BRT로 계획하였으며 최근 (’24.5.15) 임시개통되었으나, 창원 BRT는 국토교통부의 S-BRT 표준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 상당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S-BRT 시범사업 추진시 ‘S-BRT 표준가이드라인’ 에 따른 S-BRT 구성요소를 충족시킴으로써 일반 BRT와의 차별점을 강화하고 향후 타 지역의 S-BRT 구축 및 운영과정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충청권 자율주행모빌리 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4634-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연결하는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35억 3,900만원(국고보조 141억 2,300만원, 보조율 60%)을 투입하여 자율주행 버스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 실행실적을 보면, 교부된 예산 24억 100만원 중 52.7%인 12억 6,500만원만이 실행되고 11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저조한 실행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자율주행 전기버스 구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 실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table> <tr> <th>보조사업자</th> <th>예산</th> <th>교부금액</th> <th>실행액</th> <th>실행률</th> </tr> <tr> <td>세종시</td> <td>1,400</td> <td>1,400</td> <td>875</td> <td>62.5</td> </tr> <tr> <td>충청북도</td> <td>1,001</td> <td>1,001</td> <td>390</td> <td>39.0</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자	예산	교부금액	실행액	실행률	세종시	1,400	1,400	875	62.5	충청북도	1,001	1,001	390	39.0
		보조사업자	예산	교부금액	실행액			실행률														
세종시	1,400	1,400	875	62.5																		
충청북도	1,001	1,001	390	39.0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버스공영차고지 지원(4931-34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확충·개선 등으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여건 및 종사자의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실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2023년도 편성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전액 이월된 바 있음. 이처럼 다수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또는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검토와 집행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실집행률 : 2020년도 31.8%, 2021년도 34.9%, 2022년도 71.9%, 2023년도 68.2%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녹색물류전환사업 성과지표 개선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화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친환경 물류지원(4034-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친환경 물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물류전환사업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의 구입비용을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장비 등의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그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보조금의 집행이 아닌 보조금을 활용하여 구입한 장비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친화적 목표의 달성이고, 보조금의 실집행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 미세먼지 감축량 등으로 변경·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의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미세먼지 감축량, 유류절감량 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비 대비 저감계수 등 사업 효과가 좋은 사업에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정부지정핵심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동 내역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전환실적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전환교통지원(4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전환교통지원사업은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전환교통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2021년 28.8억원, 2022년 41.8억원, 2023년 43.5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 집행률은 99.9% → 95.7% → 94.6%로 하락추세임. ○ 또한,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도 감소추세임. 2021년 100.4%(707/704백만톤·km), 2022년 95.2%(674/708백만톤·km), 2023년 78%(536/687백만톤·km)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전환실적의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예산 규모를 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생활지원 및 학자금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 필요 및 무상지원사업으 로의 전환 검토	관련사업명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생활지원및학자금(융자)(4641-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자금(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현액 11억 1,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에 비해 계획현액이 감액조정되었음에도 매년 실집행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계획액 편성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주로 신규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2023년 기준 전체 수혜인원 295명 중 해당 연도에 신규로 대출을 받은 인원은 18명(6.1%)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생활지원 및 학자금 사업의 신규대출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점을 반영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무상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면허수당제도가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도로공사 총괄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건설기계 운전인원 확보를 위해 종사자가 보유한 면허 1종 당 3만원(1인당 최대 15만원)을 면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면허수당 지급 취지를 고려하면 자신이 소속된 지사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긴급 재난에 대해 관련 장비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면허수당 지급 기준은 ‘면허 보유 여부’ 뿐이므로 취득한 면허 관련 장비가 소속 지사에 존재하지 않아 관련 장비를 운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직원도 해당 면허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제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면허수당이 지급된 건수는 1,926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면허수당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61	차선도색공사 관리·감독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도로공사 총괄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속국도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차선도색공사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3,529천m²에 대한 도색을 위하여 535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함. ○ 감사원 감사결과 2021년~2022년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한 한국도로공사 77개 중 36개 (46.8%)지사에서는 일일 작업 후에 주행속도가 기재된 기록장치를 제출받지 않았음. ○ 또한, 고속국도의 반사성능 측정을 통해 시공 품질을 확인한 결과 9개 지사 중 5개 지사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실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한국도로공사 총괄 ○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하고 있음. ○ 동법에서는 취득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그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보상관리예규」에도 포함됨.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환매권을 미통지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14억원을 지급한 바 있음. ○ 또한, 고속국도 건설·유지관리 등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부지로 관리하면서 도로 사업에 필요하다는 막연한 사유로 환매권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통지를 소홀히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	국토교통부
63	실효성 있는 자산매각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한국철도공사 총괄 ○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까지 3조 9,294억원의 비핵심부동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7,073억원만 이행 완료함(18%). ○ 이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영향이 큰데,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용산역세권은 2007년부터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가 수립한 토지매각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매각 지연을 자산매각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할 것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비 고
1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제한적 적용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기본경비(1011-200, 1011-250)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지적사항	○ 기본경비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2023년 결산 내역을 보면 1억 4,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48조는 세출예산의 이월 금지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월한도를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일반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고이월제도의 적용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말에 이용과 전용이 빈발할 뿐 아니라 낭비적 폐단이 있어, 이를 이월범위에 포함하여 예산낭비와 문란한 예산집행을 막겠다는 입법취지임. ○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기본경비 이월조서를 보면, 일반용역비 이월 중 계약기간이 2023. 4. 10. ~ 2024. 2. 3. 까지인 ‘영상기록물 제작용역’의 이월사유를 기본경비 이월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용역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고이월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재정법」의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비 고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후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2032-318)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지적사항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83억원을 국비(50%)와 지방비(대전광역시, 50%)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것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25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대전광역시에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교부액 2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억 1,600만원으로, 이 중 대전광역시가 실집행한 금액은 21억 9,600(실집행률 32.7%)만원에 불과함. ○ 또한,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한 실집행액 내역이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2023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계</th> <th colspan="2">1차</th> <th colspan="2">2차</th> <th colspan="2">실집행액</th> </tr> <tr> <th>교부액</th> <th>교부일</th> <th>교부액</th> <th>교부일</th> <th></th> <th>비율</th> </tr> <tr> <td>2023</td> <td>2,500</td> <td>1,250</td> <td>12. 5.</td> <td>1,250</td> <td>12. 20.</td> <td>0</td> <td>-</td> </tr> </table>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도	계	1차		2차		실집행액		교부액	교부일	교부액	교부일		비율	2023	2,500	1,250	12. 5.	1,250	12. 20.	0	-
		연도	계	1차		2차		실집행액																								
교부액	교부일			교부액	교부일		비율																									
2023	2,500	1,250	12. 5.	1,250	12. 20.	0	-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실집행액 관리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비 고
3	과학문화센터 건 립 사업의 건축 기획용역 수행 누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 절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과학문화센터 건립(2034-406)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지적사항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에 과학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이 소통하는 과학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과학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기본설계비인 1억원이고, 3,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500만원이 이월되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계획 당시 건축기획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2023년 7월에서야 비로소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3월에 해당 용역이 완료되었음. ○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에 준공·개원 예정이었던 과학문화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28년 12월에야 준공·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법적 절차를 누락하여 사업이 지연된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필수 절차 미비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새만금개발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비 고
1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5557-323)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내부개발을 도모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옥구배수지(25,000㎡) 및 계화배수지(5,000㎡)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는 404억원임. -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옥구배수지와 계화배수지는 2021년에 착공하였는데, 계화배수지는 2023년 7월 준공되었고, 옥구배수지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임. ○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른 동 사업의 기간은 2019~2024년이었지만,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 협의 지연, 토질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공법 검토 등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었음. - 또한, 동 사업은 불용액 발생 및 보조사업자인 군산시의 실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개항, 스마트 수변도시 입주에 따른 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옥구배수지 건설공사의 사업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비 고															
2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5557-376)	주의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정책환경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1년 2월에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추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임. - 동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은 완료되었고(2022. 6. ~ 2023. 6.), 2차년도 사업은 2023년 3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상위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임. ○ 재정비가 완료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하위계획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변경함으로써 하위계획인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 【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사업추진 경과 】 <table><tr><th>주요내용</th><th>추진시기</th></tr><tr><td>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td><td>2011. 3.</td></tr><tr><td>「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td><td>2013. 9.</td></tr><tr><td>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td><td>2014. 9.</td></tr><tr><td>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td><td>2015. 11.</td></tr><tr><td>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td><td>2020. 5. ~ 2021. 2.</td></tr><tr><td>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td><td>2024. ~ 2025.</td></tr></table> ※자료: 새만금개발청			주요내용	추진시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2011.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9.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2014. 9.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2015. 11.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2020. 5. ~ 2021. 2.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2024. ~ 2025.	
		주요내용	추진시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2011.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9.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2014. 9.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2015. 11.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2020. 5. ~ 2021. 2.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2024. ~ 2025.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중지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의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비 고
3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5557-387)	주의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2권역(복합개발용지)·3권역(관광 레저용지)과 주변 국도(12호선, 30호선)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6억 4,200만원으로, 새만금개발청은 10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사업은 2023년 9월 정부의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정과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2024년도 예산의 수시배정 예산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음. ○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한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연된 새만금 SOC사업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새만금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이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비 고																				
4	새만금 홍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투자유치지원(7031-310)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 박람회 개최, 전시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실투자 유인 및 새만금 활성화 제고를 위해 새만금산단 내 기업이 선호하는 저가의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는 것임. ○ 동 사업은 크게 새만금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과 장기임대용지 조성비용으로 구분되며, 이 중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은 ‘국내외 IR활동 지원’, ‘새만금 홍보’, ‘투자전시관 운영·관리’ 내역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새만금 홍보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은 홍보대행 용역비 4억 6,500만원 및 광고료·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홍보대행 용역비로 4억 5,406만원 및 일반수용비 4억 8,344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런데, 새만금 홍보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신문사 지면광고 및 방송사 광고료로 집행되었음. 【 2023년 새만금 홍보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 (단위: 원) <table><tr><th>내용</th><th>금액</th><th>건수</th><th>비고</th></tr><tr><td>광고료 지급</td><td>376,500,000</td><td>40건</td><td></td></tr><tr><td>홍보물품비</td><td>106,897,000</td><td>4건</td><td>기념품 등 제작</td></tr><tr><td>그 밖의 비용</td><td>40,000</td><td>1건</td><td></td></tr><tr><td>합계</td><td>483,437,000</td><td>45건</td><td></td></tr></table> ※자료: 새만금개발청 - 또한 동 사업 홍보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광고료가 집중적으로 집행(40건 중 26건)되었음.			내용	금액	건수	비고	광고료 지급	376,500,000	40건		홍보물품비	106,897,000	4건	기념품 등 제작	그 밖의 비용	40,000	1건		합계	483,437,000	45건	
		내용	금액			건수	비고																		
광고료 지급	376,500,000	40건																							
홍보물품비	106,897,000	4건	기념품 등 제작																						
그 밖의 비용	40,000	1건																							
합계	483,437,000	45건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홍보예산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홍보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것																								

3. 부대의견

1. 국토교통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3조 이상의 회계간 내부거래 미실시 등의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국토교통부는 원자재값 상승, 물가변동 등이 각종 사업의 총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다.
3.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투자 승인한 해외시장개척 사례에 대해 구체적 사업명, 경과,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한다.
4.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부채액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경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5.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청약 제도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청약 가점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6.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실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승인 취소 후 재승인 물량이 중복계상되지 않은 순공급 규모를 별도로 공표한다.
7.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일 및 계약일 기준 실적뿐만 아니라 착공·준공 실적도 함께 공표한다.
8. 국토교통부는 선택형 분양주택에 대한 실적 공표 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임을 명시하는 등 수요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9.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10.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될 임대주택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11.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를 취소하고 분양전환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란 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최소화한다.
12.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비주택·주택이외거처·비정상거처 등 정책대상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다.
13.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 국토정책 종합연구의 성과 달성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14.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5. 국토교통부는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6. 국토교통부는 불법·편법 투기의 장이 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지적이 있는 무순위 주택청약 제도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17.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며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18. 국토교통부는 정책금융 공급에 있어 적절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검토함으로써, 서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9. 국토교통부는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정비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20. 국토교통부는 건축단열재인 발포 플라스틱의 장기성능에 대한 내용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검토한다.
21.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유예기간 종료 전, 시설여건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들을 고려하여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2.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23. 국토교통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 안전과 시민 불편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24. 국토교통부는 최근 확대되는 주7일 배송, 새벽배송과 관련하여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 시간, 분류작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25. 국토교통부는 배달기사에 대해서 운전경력 등 자격요건 마련 및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26. 국토교통부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시 물류정책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27.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 사업이 한국 항공시장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추후 예산 심사 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다.

28. 국토교통부는 드론첨단인재 양성방안과 관련하여 차기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시 맞춤형 미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비롯한 세부과제들의 차질 없는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9.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SOC적정성 검토로 인한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만회대책을 마련한다.
30.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항인입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만회대책을 마련한다.
31.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티웨이 항공으로의 노선 이관과 관련하여 티웨이 항공으로부터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제출받고, 승객 안전·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32.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33.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이 사업비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4. 한국철도공사는 구로역 사고 관련 사측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가족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35. 국토교통부는 도로파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과학적 조사·분석을 거쳐 해외사례, 재정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도로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36. 국토교통부는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한다.
37.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지선 통로암거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통로암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통로암거 개선을 추진한다.
38.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의 변전소가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반발이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검토한다.

39. 국토교통부는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데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0. 국토교통부는 경강선 연장선이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1.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 안성 연장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42. 국토교통부는 잠실~청주공항 철도노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한다.
43.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건설 비용부담 비율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한다.
44. 국토교통부는 장항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ITX 마음이 증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45. 국토교통부는 수색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46. 국토교통부는 의왕-광주지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대안노선을 마련한다.
47. 국토교통부는 57번 국가지원지방도와 관련하여 용인-광주민자도로 건설 등으로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48. 국토교통부는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 사업이 추후 예산 심사 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다.
49.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결함에 따른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50.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성 향상기술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정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

5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98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단체·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균·멸균 약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52. 국토교통부는 지장물 이설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광주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한다.
53. 국토교통부는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BRT, 2호선 지선 등의 사업계획을 광주시가 마련하여 제출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한다.
54.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과 관련하여 최근 무단으로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5. 국토교통부는 알뜰교통카드에서 K-Pass 사업(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56.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해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57.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변경 필요성을 검토한다.
58.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지역에서 신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공사의 수익성을 제고한다.
59.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발전 3구역 출자를 통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배당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0. 새만금개발공사는 누적 손실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적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61.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및 케이블카 조성 사업 등 주요 수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62.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현물출자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